

VER.2

실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지름길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2024. 4.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목 차



I.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1
II.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6
III.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9
1.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9
2.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14
3.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18
IV.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22
[부서·사업장 단위 자체점검표 및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기준표 포함]	
V. 우수사례	37
1.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37
2. 안전관리 업무 위탁사업장	53
3. PSM 사업장	65
VI. 주요 안전관리 활용 OPS	90
[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0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붙임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07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규칙 제35조제2항 관련)>	
[붙임 3]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3·3·3 활동』 안내문	109
[붙임 4] 『고용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 알림방』 참여 활용 협조	110
[붙임 5]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111

I.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 100% 예방할 수 있고 예방비용이 제일 싸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된 후 상당수의 경영책임자가 사망사고 예방 노력보다 처벌 회피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기업의 여러가지 심각한 손실 및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임에도,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작업 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 및 손실 비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 또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재 사망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날 수밖에 없다면 처벌이라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주로 건설업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고위험사업장을 가진 CEO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생각은 기업이 아무리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도 노동자가 불안정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결국 발생하게 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오해와 오류가 있다.

먼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모든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다.

안전보건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만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음에도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즉시 내사 종결 처리하고 있다.

운수업 노동자의 교통사고, 안전 통로가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넘어서 내려오다 추락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주에게 예방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예방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감축하고자 하는 사고는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이지 모든 사망사고는 아니다.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망사고는 100%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즉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별로 규정된 안전보건조치(안전난간, 추락방망, 안전대 착용, 회전체 덮개 등)만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 사망사고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법 위반 사망사고는 산안법에서 규정한 3중 안전망(안전시설, 보호구, 관리감독)이 모두 뚫렸을 때 발생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은 관리감독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한다면, 당연히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전제로 3중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주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하고서 작업을 하라'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법은 '이러한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라'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챙겨본다면, 더 이상 법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잡한 고용구조(다층적 협력업체 등)와 수많은 위험요인을 가진 ○○제철, ○○건설, ○○중공업 등 대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토록 규정한 중대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여러 번의 진정성을 가진 점검 및 개선이 있었다면, 금년에는 대부분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거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의미는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그 분장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말한다.

불시에 감독, 점검을 실시해도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2년말 ○○제철소(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확인감독을 1주일 동안 실시했는데, 사법처리 대상 법 위반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 위반을 못 잡은 것이다. 이전 감독에서는 수백 건씩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던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개선된 것이다.

○○제철소는 ‘21년 4월부터 협력업체 작업 시 마다 별도의 원청 관리감독자(생명지킴이) 400명 이상을 붙여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 후 작업을 진행토록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철소는 여의도 면적의 3배이고 하루 일시적 보수작업 인원까지 합하면 3만명 이상이 다양한 고위험 작업을 진행한다.

○○제철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일지라도,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적발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험요인이 적고 고용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금속이란 87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안전조치 위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사고발생 후 3개월 동안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불시 확인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명확히 수행되고 있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챙긴다면, 단기간에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우리 사업장에서는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터무니없는 기대는 위험 상황에 대한 매우 위험한 회피다.

주로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소홀에도 운 좋게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50인~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75% 정도가 위탁하고 있고, 대구 경북지역은 65% 정도 위탁하고 있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월 2회씩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상태보고서로 업체에 주고 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매월 두 차례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고 필요한 개선조치가 되었는지 챙겨 볼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지역 해당 규모 제조업체에서 ‘22년 9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중 8건이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8건 중 7건(87.5%)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이미 개선토록 지적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심지어 3~4차례 이상 지적한 위험을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이상 운이 통하지 않은 순간이 온 것이다.

지적받은 것만 경영책임자가 챙겨도 안전관리 위탁사업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도 1억~50억 원 현장은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므로, 안전관리 위탁사업장에서 지적받은 사항만 즉시 개선하여도 법 위반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인 손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이다.

실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회사가 법 위반 사망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손실 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22년 1월 아파트 건축 공사 중 붕괴사고(6명 사망)를 일으킨 ○○○○개발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붕괴사고가 난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약 4천억원, 철거 후 다시 짓는 3년 동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비용, 아파트 브랜드 가치 추락, 기업 주가하락, 유가족 합의금, 변호사 비용,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따른 손실 등 전체적인 손실비용이 수 조원에 이를 것이다.

평택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그룹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기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미 산재예방을 포함한 ESG경영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50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손실이 최소 10억 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

유가족 합의금이 3~5억 원, 1개월 이상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손실, 변호사 비용, 납품업체 등에 대한 기업 이미지 추락, 구인 애로 가중,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고 수습 및 정상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은 재해자의 생명과 남겨진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평생 안고 갈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거나 보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남편을 법 위반 산재로 잃은 임신한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유복자로 키우면서 짊어질 슬픔과 고통의 깊이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해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를 손실 비용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100% 예방 가능한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예방이 가장 싸고, 예방만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2024년 4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 작업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①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②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중요성

- 모든 법위반(수사대상) 산재 사망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함

(제조업) 최근 산재 사망사고 사례

- ✓ '24.1.9(화) 경북 포항에서 이물질 제저 작업 중 룰에 끼임 사망 1명
 -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구체적 업무로 분장·관리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
- ✓ '23.5.14(일) 경북 영천에서 적재 작업 중 화물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 ✓ '23.4.13(목) 대구 달성군에서 자동포장기 룰 교체작업 중 룰과 프레임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구체적 업무로 분장·관리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최종 목표는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어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가장 확실한 면책 기준이 될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①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②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③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 업무 Tip

■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의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

①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제1항>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②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산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①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②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의 업무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붙임1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별표 3(붙임2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에 따른 벌칙(산안법 제175조)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Ⅲ.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 ❖ 기존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순회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최대한 활용 → 서류작업(paper work) 최소화
- ❖ 현장 안착을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

①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중요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됨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어떤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작업현장에서 그대로 이행 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원칙임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그 절차에 따른 확인·개선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실행전략

- (기본원칙)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한 후, 유해·위험요인별로 산안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공정·작업별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위험장소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망라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되,
 -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임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은 공정·작업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끼임】** 방호장치⁵, LOTO⁶(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⁷, 충돌방지장치⁸

- **(안전보건조치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함

【 참고: (1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 ①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 ②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 **(Check Point)**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 여부(도급작업 포함)
 * **【추락】** 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끼임】** 방호장치⁵, LOTO⁶(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⁷, 충돌방지장치⁸
- ③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④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였는가?
 - ⑤ 안전보건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제7호, 산안법 제36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3호·제7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도급업체(이하 '원청'), 관계 수급업체(이하 '하청')

□ 중요성

-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에서 발생 → 원청이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리스트 작성을 지원·관리하여 하청의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 필요
- 건설업 등의 경우,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곧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며, 하청의 모든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함께 지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원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하청이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 대상은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고,

- 산안법 제63조는 원청이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함께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 **(상시 노무제공 하청)** 원청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하청이 소규모 업체로 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원청이 먼저 하청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하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하청)** 유지, 보수작업 등 일시적 하청의 경우, 원청이 중심이 되어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작성한 후 하청과 협의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업무 Tip

■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원청과 하청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이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원청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을 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 **[관계 법령]** 산안법 제63조 및 제64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6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 8.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중요성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잘 마련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로 분장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에서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 **(관리감독자 지정)** 산안법 제16조의 취지에 맞게 작업현장 관리감독자는 작업단위별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며,
- 작업반장·조장 등의 직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는 관리감독자로는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지정된 관리감독자별로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 업무분장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이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여야 함
- 이때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인 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구체화된 업무분장이 바람직함

-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관리감독자는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조치하고,
 - TBM* 등을 통해 작업자들이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 * (Tool Box Meeting)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 관리감독자(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
-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 해당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 가급적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참고: (2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 ②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역할)은 명확한가?

☞ (Check Point) (1)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업무분장, (2)하청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체계 형성 여부
- ③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 ④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반드시 사업장 순회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확인
- ⑤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1)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2)일시적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중·후에 확인·관리토록 지원, (3)하청 등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여부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 산안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생략)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참고(P8)>**

-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중요성**

- 산재 사망사고 예방은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때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하청인지 평가하는 기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하청의 관리감독자가 해당작업의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확인·관리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서 하청의 ‘산재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 산안법 제61조에서도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 **(하청 선정기준)** 도급·용역·위탁 등 하청 선정 시 평가 기준에 관리감독자 역할부여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조치할 필요

- 이를 위해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하청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시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포함하고,
- 평가기준에 따른 하청 평가 시 실질적으로(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우수업체와 계약체결
 - ※ 필요시 평가 기준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작동성 여부’ 배점 기준 상향 필요
- **(관리감독자 지정)** 하청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할부여 및 수행지원)**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역할 부여는 하청이 하되, 그 내용을 원청과 공유하여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원청은 하청 관리감독자가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산안법 제61조, 제63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중요성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중대법 적용 대상사업장에서 범위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해당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평가·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고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에서 관리감독자가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 **(확인·평가 기준)**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하는 기준은 관리감독자별 구체적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업무수행평가 주요 내용)** 1)소관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 숙지 여부 (특히 비정형작업 작업절차 등 준수 여부 확인), 2)위험요인별 조치사항 확인 후 작업 진행하는지 여부, 3)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TBM 실시하는지 여부, 4)소속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휘를 하는지 여부 등
- **(확인·평가 주체)** 소속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중간관리자(부서장 이상의 관리자 등)가 수시로 실시하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서 중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확인·평가 방법)** 중간관리자는 소속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 부여받은 업무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는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평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부서별 취합·분석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도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효과적임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본사가 중심이 된 확인·평가*는 각 사업장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한 확인·평가가 제대로 실시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사업장별 확인·평가는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에 따라 관리
- **(사후관리)** 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되,
 - 필요시 우수직원(또는 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 (3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 ①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 ② 중간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평가 시,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여부
- ③ 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안전관리자 등은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
- ④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는가?
- ⑤ 경영책임자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1)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경영책임자의 적극 지원 여부 (2)하청 관리감독자의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개선 지원 여부

□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5호**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중요성**

- 도급 등을 준 경우에는 하청의 관리감독자가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는 것이 산재예방을 위해 중요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에 따라 원청이 평가·관리해야 할 관리감독자의 범위에는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도 포함됨**

□ **실행전략**

- **(확인·평가 기준 공유)** 원청이 마련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충실도의 확인·평가기준을 하청에 공유하여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산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확인·평가 기준을 하청에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확인·평가 방법)**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하청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각종 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되,
 - 하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청 자체적으로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하청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은 반드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사후관리)** 하청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 하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 3.~ 8. (생략)

IV.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 ❖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적극 보완토록 조치
- ❖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한 후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에 도달하도록 노력

①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 중요성

- 사업장의 책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이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 미흡한 부서 또는 사업장(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함
- 이러한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점검은 기존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 중심의 작업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임

□ 실행전략

- (점검주체) 부서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책임하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함께 실시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요원과 함께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경우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가끔씩 교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

- 특히 사업장(공장)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사업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은 본사 안전보건팀이 주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점검주기) 부서별 점검은 가급적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본사 안전보건팀이 실시하는 사업장 단위별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검방법) 부서별 점검은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양식』 <이하 "점검·평가표(p25)"라 한다>를 활용하여 실시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별로 점검·평가표를 작성하고,
 - 사업장 단위별 점검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한 부서별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점검 진행 시 반드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뷰 방식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후속조치) 부서별 점검이 종료되면 점검팀은 점검·평가표를 해당 부서장에게 공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및 본사 경영책임자(안전보건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 사업장 단위별 점검이 종료되면 안전보건팀은 사업장 책임자(공장장 등)에게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조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중요성

-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 단위별 점검·평가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으로 발전되는데 활용하고,

- 향후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필요한 자체 준비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함
- 특히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부서, 협력업체, 사업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실행전략

- (평가주체 및 주기) 부서별, 사업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과 동일하게 실시
- (평가 및 등급부여 방법) 부서별 평가는 해당 부서 소속 관리감독자별로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기준표'(p35)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관리감독자의 등급을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관리감독자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 협력업체의 등급으로 부여하고
 - 사업장 단위별 평가는 해당 사업장 소속 부서별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부서의 등급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평가는 사업장 단위별 부여된 등급 중 가장 낮은 사업장 등급을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
- (후속조치)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 단위별로 부여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상위 등급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서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 ❖ 본 양식은 부서단위의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수준 점검을 위한 자체 점검·평가표 양식입니다.
- ❖ 부서 또는 협력업체 단위 자체 점검은 가이드의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실행전략 (p22)을 참고하여 부서별 또는 협력업체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협력업체 각각은 하나의 부서 단위로 산정하여 점검실시)
- ❖ 점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부서장(협력업체 대표 등) 주도로 작업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단위 자체 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중’(주의) 또는 ‘하’(위험) 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부서 개요

사업장명	○○기업(주) 경주 1공장		
부서명 또는 협력업체명	00부서 (또는 협력업체 △△정공)	부서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수	20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00명)
부서장	(직책) 성명	안전관리자	(직책) 성명
		보건관리자	(직책) 성명

II

점검·평가 개요

- 점검 기간, 점검반 구성(구성내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참여여부), 점검 방법(현장 순회 및 기기 작동 등), 점검 시 부서장 참여 여부

III 단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 점검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주요 점검사항 】

- ①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서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 ②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Check Point)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 여부(도급작업 포함)

* **【추락】**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끼임】**방호장치⁵, LOTO⁶(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⁷, 충돌방지장치⁸

- ③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④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였는가?
- ⑤ 안전보건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부서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황

- 00부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현황('24.0월 00일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생산	가공	전단기	방호장치 탈락에 의한 끼임 위험 등 13건
		프레스	프레스 오조작에 의한 협착점 내 끼임 위험 등 12건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부서 전체 총 25건 발굴하여 리스트 작성함
→ 금형 적재 시 낙하위험 요인 추가('24.0월 00일)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
→ 근로자 의견에 프레스 방호장치 오작동이 간혹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 즉시 수리 조치, 프레스 옆 측면 공간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요구가 있음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①', '⑤' 항목 미흡

- (유해·위험요인 일부 누락) 부서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일시적 보수·수리·정비 등의 일부 비정형 작업에 대한 발굴이 다소 미흡
→ 현장 점검 시 금형 수리 작업 중 안전블록 미설치, 수리 작업 후 방호장치 이상 유무 미확인 등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누락을 확인
- (안전조치 법적요건 미검토) 관리감독자 및 경험이 많은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조치를 결정하였으나 법적 요건 검토 불충분

□ 향후계획

- (유해·위험요인 지속 발굴) 추가 유해·위험요인은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비정형 작업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 발굴(~'24.0월 00까지)
- (법적요건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0조~00조까지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자 등과 추가 논의 후 법적요건 충족하도록 조치사항 결정('24.0월 00일까지)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주요 점검사항 】

- 1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 2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역할)은 명확한가?

☞ (Check Point) (1)관리감독자인 조반장은 맡은 직무별 역할이 다르므로 직무별 업무분장 여부, (2)협력업체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체계 형성 여부

- 3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 4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반드시 부서 내 작업장 순회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확인

- 5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1)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2)일시적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중·후에 확인·관리토록 지원, (3)하청 등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여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부서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황

- 00부서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24.0월 00일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 건수	관리감독자
생산	가공	전단기	13건	박 0 0
		프레스	12건	송 0 0

- (지정) 공정·작업별 세부 작업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 관리감독자 총 2명 지정('24.0월 00일)
- (역할부여) (1)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도록 업무분장 완료('24.0월 00일), (2)격주 단위 부서장이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여부 확인
- (수행 지원) (1)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해 부서장이 수시교육 실시 (2)관리감독자별 유해·위험요인 상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역할 수행 지원('24.0월 00일)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1', '4' 항목 미흡

- (지정 미흡) 휴일 및 야간작업, 일시적 프레스 정비·수리 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관리감독자 지도·감독 없이 작업 수행
- (업무숙지 미흡) 관리감독자 박00이 전단기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인지 미흡

□ 향후계획

- (지정 철저) 지정 누락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 추가 지정(2명)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지도·감독 없이 작업 수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24.0월 00일까지)
- (교육 강화) 관리감독자 박00에 대해 전단기의 유해·위험요인 인지하도록 부서장이 별도 교육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인지여부 재확인 예정(~'24.0월 00일까지)

【 주요 점검사항 】

❶ 부서장이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 (Check Point) ¹⁾소관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 숙지 여부(특히 비정형작업 작업절차 등 준수 여부 확인), ²⁾위험·요인별 조치사항 확인 후 작업 진행하는지 여부, ³⁾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TBM 실시하는지 여부, ⁴⁾소속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휘를 하는지 여부 등

❷ 부서장은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가?

❸ 부서장은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월 2회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평가 시,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여부

❹ 부서장은 상위관리자(공장장 등) 등에게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는가?

❺ 부서장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부서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황

- (역할수행 확인) 부서장은 관리감독자 면담 및 유해·위험요인 상세 체크리스트 현황 등을 통해 확인(월 2회 이상)
- (역할수행 평가) 부서장은 관리감독자 면담 시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 숙지 여부, TBM 실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업무수행 보고) 부서장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매월)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❶', '❸' 항목 미흡

- (확인방안 부재 및 미흡)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한 체크포인트 위주 체크리스트 준비 필요
- (역할수행 평가 미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 시 면담 위주로 진행되어 현장 확인 부분이 미흡

□ 향후계획

- (역할 강화)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토록 부서장이 재교육하도록 조치(~'24.0월 00일)
- (현장 확인 등 보완) (1)관리감독자 평가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여 위험요인별 조치사항 및 진행 상황 등을 추가하여 평가('24.0월 00일). (2)관리감독자 소속 작업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수행 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IV 안전관리수준 자체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 점검 결과

구 분		평가 기준	평가결과 (해당란 'O' 표시)
상		1, 2, 3단계 모두 이행되는 경우	
중		1, 2, 3단계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한하여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상	1, 2, 3단계 중 일부 미흡하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경우	
	중	1, 2, 3단계에서 중요도 높은 업무(★)가 각 한 개씩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1, 2, 3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각 두 개 이상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든 단계가 양호하여도 기본사항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수준 자체 평가 시 별첨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등급 판단기준표」 활용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주요계획

○

-

-

○

-

-

기타 사항(필요 시)

○

-

-

○

-

-

사업장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 ❖ 본 양식은 사업장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수준 점검을 위한 자체 점검·평가표 양식입니다.
- ❖ 사업장 단위 자체 점검은 가이드의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실행전략(p22)을 참고하여 부서별·협력업체별로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집계하여 실시 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본사의 안전팀이 소속사업장(여러개)의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평가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 및 작성평가
- ❖ 자체평가 결과 기업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별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중’(주의) 또는 ‘하’(위험) 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주도하에 순차적으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확인·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기업(주) 경주 1공장		
소재지	본사		업종	
	사업장			
근로자 수 (기업 전체)	350명		근로자 수 (해당사업장)	150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직책) 성명		안전관리자	(직책) 성명
			보건관리자	(직책) 성명

II 점검·평가 개요

○ 점검·평가 기간, 점검·평가반 구성, 점검·평가 방법, 점검·평가 시 경영책임자 참여 여부, 경영책임자 보고일시·내용 등을 간략하게 작성

*부서 단위(협력업체 단위) 점검을 토대로 사업장 단위 점검실시

III

단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 점검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주요 점검사항 】

- ①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 ②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Check Point)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 여부(도급작업 포함)

* [추락]비계¹, 지붕², 사다리³, 고소작업대⁴, [끼임]방호장치⁵, LOTO⁶(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⁷, 충돌방지장치⁸

- ③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 ④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였는가?
- ⑤ 안전보건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황

-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현황('24.0월 00일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입·출고	입·출고	지게차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로 무자격자 운전 등 13건
	입고	크레인	크레인 운반 작업시 물체 낙하위험 등 14건
생산	가공	전단기	전단기 동력전달부(체인) 끼임 위험 등 13건
		프레스	프레스 오조작에 의한 협착점 내 끼임 위험 등 12건
공무	공무	범용선반	회전부위에 끼임 위험 등 14건
		밀링	밀링 동력전달부(V-벨트) 끼임 위험 등 12건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사업장 전체 총 78건 발굴하여 리스트 작성함
→ 00부서의 금형 적재 시 낙하위험 요인 추가('24.0월 00일)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00부서 프레스 방호장치 작업 전 점검(매일) 및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요구 반영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①', '②' 항목 미흡

- (유해·위험요인 일부 누락)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일시적 보수·수리·정비 등의 일부 비정형작업에 대한 발굴이 다소 미흡
→ 00부서 금형 수리 작업 및 00부서 크레인 정비 작업 등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누락 2건 확인
- (하청 작업 리스트 작성 미흡) A사(하청)는 소규모 업체(근로자 10명)로,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재작성 필요

□ 향후계획

- (유해·위험요인 지속 발굴) 추가 유해·위험요인은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보완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발굴('24.0월 00일까지)
- (하청 리스트 작성 지원) 하청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리스트 작성을 지원·관리('24.0월 00일까지)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주요 점검사항 】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②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역할)은 명확한가?

☞ (Check Point) (1)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업무분장, (2)하청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체계 형성 여부

③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④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반드시 사업장 순회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확인

⑤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1)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2)일시적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중·후에 확인·관리토록 지원, (3)하청 등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여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현황

○ 공정·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24.0월 00일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 건수	관리감독자
입·출고	입·출고	지게차	13건	김 0 0
	입고	크레인	14건	이 0 0
생산	가공	전단기	13건	박 0 0
		프레스	12건	송 0 0
공무	공무	범용선반	14건	윤 0 0
		밀링	12건	오 0 0

- (지정) 공정·작업별 세부 작업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 관리감독자 총 6명 지정
- (역할부여) (1)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자신의 역할이 인지되도록 업무분장 완료('23.0월), (2)현장 순회 점검 시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여부 확인(월1회)
- (수행 지원) (1)경영책임자 주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해 교육 실시(연 1회), (2)유해·위험요인 상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지원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①', '④' 항목 미흡

- (지정 미흡) 휴일(또는 야간) 작업,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관리감독자 지도·감독 없이 작업이 수행
→ A사(하청) 야간작업 및 00부서 금형 수리 작업 시 관리감독자 누락 확인
- (업무숙지 미흡) 00부서 면담 시, 신규 지정 관리감독자 등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인지 미흡

향후계획

- (지정 철저) 전 작업 과정 전수 파악(비정형작업 포함)('24.0월 00일) → 추가 관리감독자 지정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지도·감독 없이 작업 수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24.0월 00일)
- (교육 강화) 신규 지정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강화(~'24.0월 00일)

【 주요 점검사항 】

- ①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 ② 중간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 (Check Point) 평가 시,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여부
- ③ 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안전관리자 등은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
 - ④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는가?
 - ⑤ 경영책임자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1)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경영책임자의 적극 지원 여부, (2)하청 관리감독자의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개선 지원 여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황

- (역할수행 확인) (1)공장장은 관리감독자(사내하청 포함)의 유해·위험리스트 점검 현황을 확인(매월), (2)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 리스트 점검 현황 및 관리감독자별 안전보건 활동(현장 개선 내용 및 견수 등) 확인 및 취합(매월), (3)경영책임자는 셋째 주 수요일에는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중 하나를 테마로 선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여부 확인

☞ 분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역할수행 평가) 안전점검회의(경영책임자 주관, 부서장 전원 참석, 매분기)를 통해 실적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는 공유 및 담당 관리감독자 포상, 미진 사항은 해당 공정 관리책임자 보완 보고(3일 내) 및 인사사고과 반영
- ※ 인사사고과 반영 등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추진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②', '③' 항목 미흡

- (일부 확인 누락) 사내 하청 A사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확인은 하고 있으나, 단기에 완료되는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 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여부 확인 누락
- (역할수행 평가항목 미흡) 00부서의 평가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업무수행만 반영하여 관리감독자별 업무분장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

□ 향후계획

- (확인 철저) 전 작업 과정 전수 파악(비정형작업 포함)('24.0월 00일)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여부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24.0월 00일)
- (평가항목 보완) 관리감독자별 구체적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평가할수 있는 항목을 추가 구성·보완(~'24.0월) → 분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 보고

IV 안전관리수준 자체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 점검 결과

구 분		평가 기준	평가결과 (해당란 'O' 표시)
상		1, 2, 3단계 모두 이행되는 경우	
중		1, 2, 3단계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한하여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상	1, 2, 3단계 중 일부 미흡하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경우	
	중	1, 2, 3단계에서 중요도 높은 업무(★)가 각 한 개씩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1, 2, 3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각 두 개 이상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든 단계가 양호하여도 기본사항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수준 자체 평가 시 별첨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등급 판단기준표」 활용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주요계획

○

-

-

기타 사항(필요 시)

○

-

-

❖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주요지도 방법

✓ (방문 前)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 수준 확인, 최근 3년간 점검 시 지적사항 및 재해발생 현황, 자율점검표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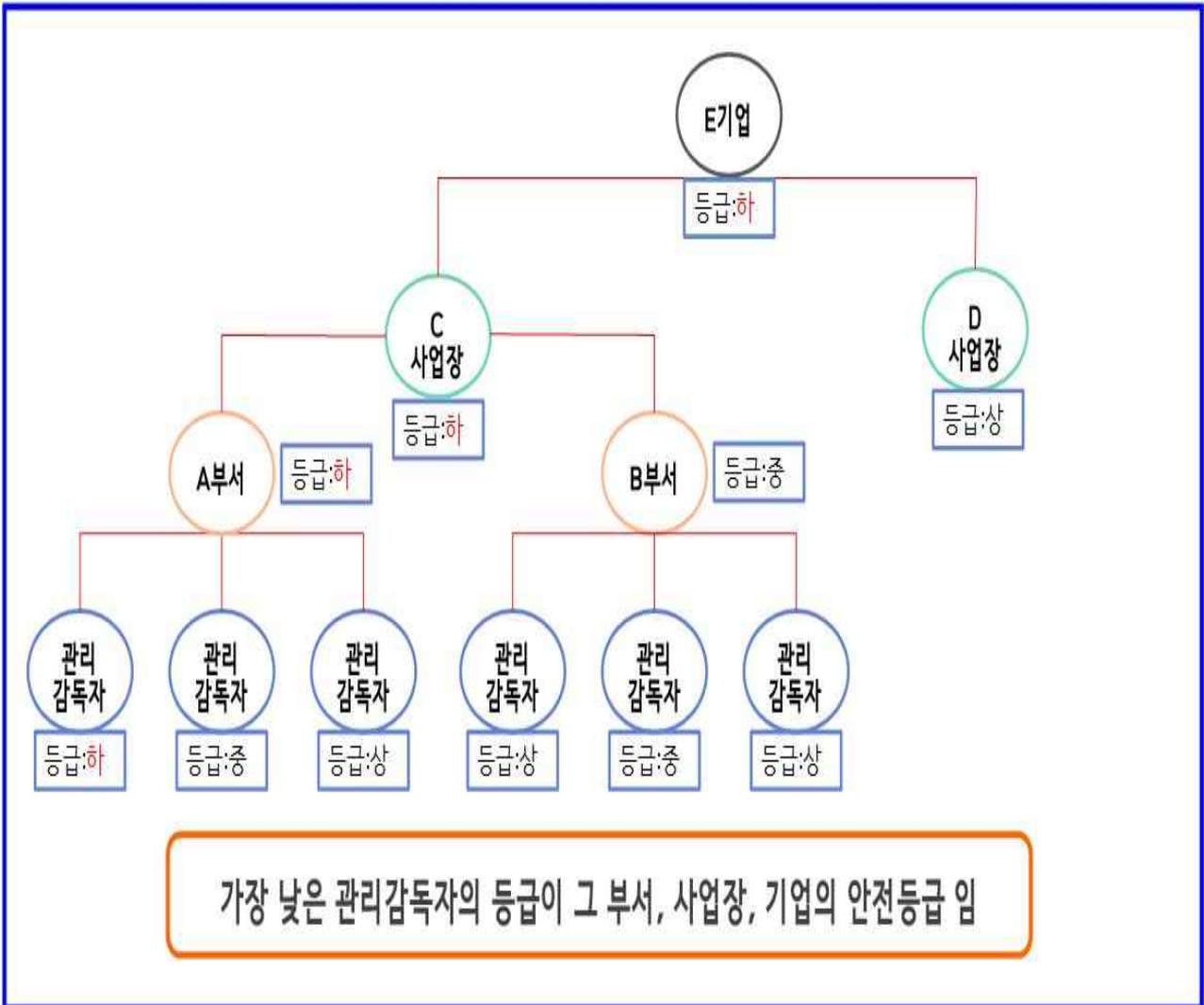
✓ (방문 時) 위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 기준표'에 따라 서류(최근 6개월간 재해예방 기관 지도자료 및 업무분장표, 자체 유해·위험요인 발굴 리스트 등) 확인 → 사업장 순회 및 각 관리감독자 인터뷰(무작위 선별 실시) → (대표이사 등 면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강평 및 지도 → 기존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등급 조정

✓ (방문 後)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등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 등급 수준 상향 노력이 없는 불량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전문지도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

※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등급 '상')은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 예정

【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기준표 】

등급 결정 시 주요 착안사항		
1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이행여부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담당자와 현장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 여부	✓
- 조치사항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사항의 적정성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시 근로자 참여 및 의견반영 여부	✓
2단계(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관리감독자 지정(★)	○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
-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공정별(하도급별)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여부 ○ 공정 변화를 고려한 최신화 여부	✓
-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 개별 면담 등을 통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이해 여부 ○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여부	✓
- 관리감독자 대체(●)	○ 유사시 지정된 관리감독자를 대체하여 이행하는 체계 마련 여부	✓
- 관리감독자 지원(●)	○ 관리감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 예산, 장비, 교육,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원 여부	✓
3단계(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관리감독자 수행 확인(★)	○ 관리감독자의 상위관리자 등이 관리감독자가 분장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	✓
- 관리감독자 업무 평가(●)	○ 관리감독자의 상위관리자 등이 관리감독자가 업무 분장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평가 여부	✓
(단계공통) 기본사항		
- 위험의 반복성	○ 동일한 지도사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지 여부	✓
- 수용성	○ 지도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
등급 결정 기준		
상	위 내용이 모두 이행되는 경우	
중	1, 2, 3단계 중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한하여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상	1, 2, 3단계 중 일부 미흡하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경우
	중	1, 2, 3단계에서 중요도 높은 업무(★)가 각각 한 개씩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1, 2, 3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각각 두 개 이상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든 단계가 양호하더라도 기본사항 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수준 평가 시 참고사항(평가 요령)		
동 기준은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별, 기업별 단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적용 가능하나, 각 평가 단위의 등급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p.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평가 단위의 하위 단위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해당 평가 단위의 등급으로 부여해야 함		



V. 우수사례

1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사례1] ○○알미늄 [업종: 제강압연업, 근로자 수: 380명]

❖ 전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개선 의견 청취·제안 등)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보강(확대)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각 세부작업 공정별 관리감독자를 통한 근로자 청취조사(매월) 및 작업전 TBM, 사업장 내 순찰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의견 청취서>

소속	냉연부 작업과 한 정동
공정	TENSION LEVELER
주요질병	고온 TENSION LEVELER
위험요인	침 및 기타 이물질 등이 용액에 떨어져 체온저하 발생 H2O2나 CLEANING 같은 화학 시약 방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개선의견	CLEANING 장비 고온 노는 경감한다. 한계 넘어서는 인양으로 인하여 작업중에는 음하복기서 필요
안전작업계획서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방안	현재 대부분이 위험이 개선되었는지 생략하여 앞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해서 생략한다. 또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은 생략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 및 인양하는 것이 필요.

<근로자 의견 청취서>

소속	냉연부 작업과 정과용
공정	코일주입
주요질병	데일선 과열병
위험요인	① 코일 주입중 피로중기 이물질 제거를 위해 작업중중간마다 두분과의 안전기 위험합니다. ② 기계작업중 과열과 과열기작을 안전에 위험합니다.
개선의견	① 안전 벨트 착용 후 피로중기 작업이 방지 되어 안전에 도움됩니다. ② 과열과 과열 기계작업에 안전 벨트가 실제 작업 중중간마다 안전기 보조되었습니다.
안전작업계획서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방안	다시한 안전에 대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작업전 TBM 일지 (Tool Box Meeting)

근일 작업전 위험요인 파악

1. 준비 조작시 안전수칙 준수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

1. 가동중인 설비나 설비를 둘러싼 안전벨트 내로의 접근을 금지한다
2. 정비나로 접근하는 할비가동중 금지하고 안전벨트 내로 접근한다
3. 2인 1조 동시작업과 수선후는 확인, 또 확인한다
4. 안전벨트 내로 작업자가 들어갈시 나머지 작업자는 탈히 조작반에서 대기한다
5. 조작반 자리 이탈시 경광등 표시판을 밀어 버지한다
6. 경광 및 표안확인후 밀히 안전벨트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예 / ○ 아니오	【 해당 : ■ / 해당없음 : ○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1일 1회)	<input type="checkbox"/> 일반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방사선노출	<input type="checkbox"/> 중장비사용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input type="checkbox"/> 절단작업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근일 최초 1회)	<input type="checkbox"/> 일반작업	<input type="checkbox"/> 굴착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중부피할 :		
■ 차량계 하역분반기계 사용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차 등)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크레인, 굴착기 등)			
○ 전기작업 (50볼트 이상 또는 250볼트압력어 이상)			
■ 중량물의 취급작업 (리프트크레인, 차부크레인 등)			
■ 중부피할 :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등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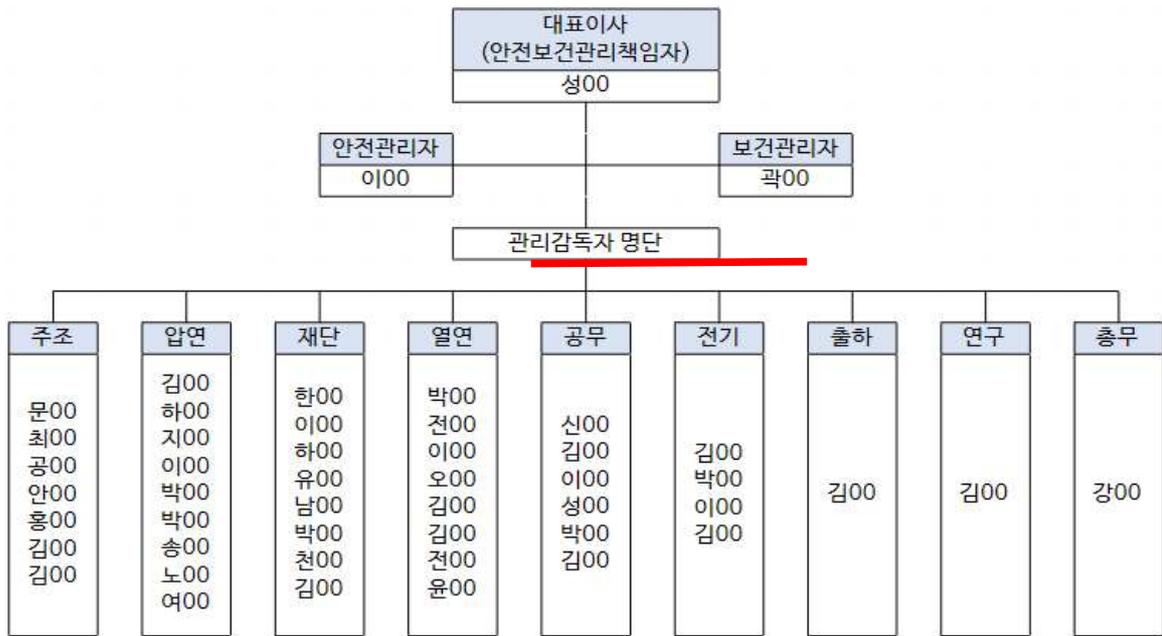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공정명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감독자
세척기	코일투입 (스플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운반, 투입시 운전미속으로 인해 코일의 편하중 및 급선회, 급정지, 급가속등으로 인한 지게차 전복의 위험 → 지게차 안전수칙 교육 → 지게차 운행 지정인외 운행금지 ○ 지게차 정지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지 않아 보행중인 작업자가 포크에 걸려 넘어지거나 코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하다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 → 지게차 안전수칙 교육 → 지게차 운행 지정인외 운행금지 ○ 지게차 면허 무자격자 및 지정인외 임의로 운행하다 운전미속으로 인한 충돌의 위험 → 담당 설비 관리감독자 수시 순찰 → 지게차 운행 지정인외 운행금지 ○ 전방 주시태만 및 후진 경보등 불량으로 인한 작업반경 내에서 보행자 또는 코일과 충돌, 압착의 위험 → 지게차 안전수칙 교육 → 지게차 운행 지정인외 운행금지 → 지게차 기능 작동불량시 담당 부서와 상시 협조 ○ 코일에 CONE 결합시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전 불안정한 상태(숙취, 건강)로 작업에 임하다 미끄러지거나 부딪힐 위험 → 교대시 안전교육 중 관리감독자 작업자 상태확인 	A조 황00 B조 김00 C조 김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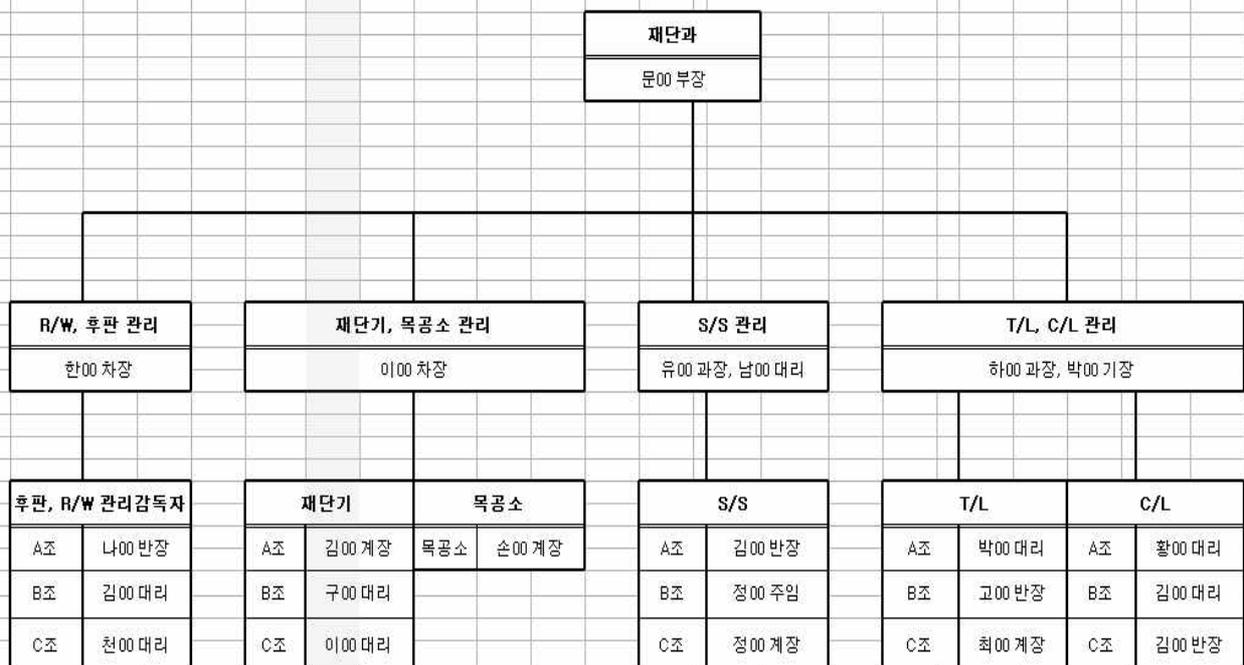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공정별 세부 작업에 맞춘 업무분장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 추가 지정으로 역할 부여(당초 45명에서 152명으로 확대 지정)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냉연부 재단과 관리감독자 조직도



-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 및 임원 주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추가 보강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재단과 관리감독자 교육

- ✔ 재단과 관리감독자(00명) 교육실시
- ✔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리스트를 토대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점검 현황을 일일 확인 결재

일 일 점 검 사 항			명세 양호:○ 미흡:△ 불량:×
분야별	점검사항	결과	비고
기계설비	• 불안전한 상태의 방지여부	○	
	•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 실시상태	○	
	• 화산재 및 구동부문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	
	• 방호장치 부착상태 및 외관상태	○	
	•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 마모상태	○	
전기	• 전기설비의 배선상태 및 S/W 파손 여부	○	
	• 접지가 없는 2Core 선선 사용여부	○	
소방, 화공	• LPG, 산소통 고압용기 온도방지 조치여부	○	
	• 압력계이지 파손여부 (기계설비, 배관 등)	○	
	• 소화설비(소화전, 소화기 등) 상태	○	
	• 불발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보관상태	○	
지게차	• 교육, 급선회, 급정지 여부	○	
	• 안전벨트 착용 여부	○	
	• 전조등 점등 여부	○	
	• 무지각지 운전 여부	○	
	• 기타 지게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전자결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종류	결재자	결재일	결재의견	상태
결재	나장 성	2023-03-24 17:33:19		결재
결재	공장장 김	2023-03-24 17:19:53		결재
결재	부공장장 차	2023-03-24 17:18:42		결재
결재	부장 문	2023-03-24 16:25:11		결재
결재	대리 박	2023-03-24 15:00:50		결재
협조	주임 권	2023-03-27 08:41:32		협조
참조	사원 이	2023-04-25 08:23:37		참조
참조	사원 김	2023-03-28 09:33:27		참조
문서번호	냉면재단-관리일자-2303-14	기안일시	2023년 03월 24일	
기안자	박 1736	부서/직위	재단과/대리	
시행일자	2023-03-24	보존년한	2026-03-27 08:41 (3년)	
제목	냉면부 재단과 관리감독자 일일업무일시			

- (역할 수행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시, 관리감독자 담당 공정·파트·부서 내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평가

☑ 관리감독자는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부서장, 환경안전부(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경영진(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장장, 부공장장)까지 확인절차를 거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보건 개선보고

2023. 03

안전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월 1회 점검 중

안전보건 개선현황 요약

부서명	공정	공용장	공용장	공용장	공용장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 (역할 수행 독려) 현장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점 등 제안에 대하여 아래 QR코드를 통하여 상시 의견 청취하여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03 근로자 참여 시스템

- ☑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은 QR코드를 활용하여 근로자 의견 개선
-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왼쪽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종사자 의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①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갑니다.
- ② 링크(URL)가 생성되면 터치 합니다.
- ③ 종사자 의견을 입력합니다.
- ④ 종사자 의견은 안전보건팀으로 제출됩니다.

종사자의견 등록하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사례2] 세원물산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540명)

- ❖ 현장 관리감독자를 안전지킴이로 지정, 안전지킴이 중심으로 전 근로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 지속 파악·관리하고,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청취조사(아차사고) 및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파악

▣ 현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전파

작업자 청취	현장 순회점검	안전지킴이 활동																				
 <p>발표일인 근무일당 50분으로 인한 인터뷰 시간 확보를 위해, 작업장 내 작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함</p> <p>발표일인 근무일당 50분으로 인한 인터뷰 시간 확보를 위해, 작업장 내 작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함</p> <p>고무발판이 덮여 있음 - 단지 방향</p> <p>고무발판 교체되지 않음</p>	 <p>현장 순회점검 지점 내용</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내용</th> <th>상태</th> <th>비고</th> </tr> <tr> <td>1</td> <td>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배치</td> <td>○</td> <td></td> </tr> <tr> <td>2</td> <td>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교육</td> <td>○</td> <td></td> </tr> <tr> <td>3</td> <td>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점검</td> <td>○</td> <td></td> </tr> <tr> <td>4</td> <td>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활동</td> <td>○</td> <td></td> </tr> </table>	구분	내용	상태	비고	1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배치	○		2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교육	○		3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점검	○		4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활동	○		 <p>안전지킴이(관리감독자) 단독방에 담당 공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내용을 공유</p>
구분	내용	상태	비고																			
1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배치	○																				
2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교육	○																				
3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점검	○																				
4	작업장 내 안전지킴이 활동	○																				
<p>현장 작업자가 문제점(아차사고) 등을 안전지킴이(관리감독자)에게 내용 전달</p>	<p>공장장, 현장 조반장(관리감독자)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 소망, 3정5행 등을 점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p>	<p>안전지킴이(관리감독자) 단독방에 담당 공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내용을 공유</p>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공장장 주관, 새벽시장 회의 등에서 안전지킴이 및 직·간접 부서의 중간관리자 참여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공장장 주관 새벽시장 개선 및 조치방안 결정

새벽시장	
	
<p>공장장 주관 새벽시장 실시 - 매주 1회 오전 07:00 주야간 근무자 통합 실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및 조치방안을 직·간접 부서간 협의하여 결정</p>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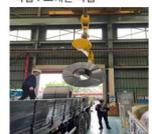
공정	작업내용	담당자	사진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TM A36	제품을 지그 위에 올려놓는 작업 (제품로딩)	김순모		공정 내 짧게 재단된 고무매트 끝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	1. 작업자 변경 범위 내 전체 설치 2. 노후화로 훼손된 매트를 주기적으로 점검 교체
NE A31	제품을 지그 위에 올려놓는 작업 (제품로딩)	김동화		차중 물량 급증으로 제품 정규 PLT 부족 발생으로 IS22 PLT 사용, 불안정한 자세로 장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1. 공정 PLT 수량 파악, 물량 급증시 필요 수량 개선반 협조 요청
본동 지게차 충전소	지게차 작업	이원형		입식 전동지게차 충전 후 충전케이블 관리 미흡으로 피복이 훼손되어 감전, 전기화재 발생 위험	1. 매주 금요일 아침조회 후 이원형 생산 부장 주관 지게차 충전소 점검 실시 (07:50 ~ 08:15) 2. 2주 1회 영동지게차 점검 및 수리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각 작업 공정별 조장, 팀장을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로 지정하여 역할 부여(조장 26명, 팀장 10명)

관리감독자 업무 분장



<크릴 입고>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자	
공정 및 작업 ○ 공정: 크릴 입고 작업: 크레인 작업 	○ 경복음 작동 및 제어장치 등 고장으로 인한 충돌이나 깨임 사고 발생 위험. → 주기적 점검 및 점검시트 작성. ○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가 정상 동작 하지 않아 하물의 낙하 등 발생 위험. → 주기적 점검 및 점검시트 작성. ○ 크릴 운반시 신호수 미배치로 하중물과의 충돌 등 발생 위험. → 크레인 운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한다. (운전수1, 신호수1) ○ 크릴 안전시 가이드 미손으로 전도 위험. → 담당부서 주기적 관리, 보강 실시	- 관리감독자: 정근배 - 관리담당자: 신규로			
<블랭킹>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자	
공정 및 작업 ○ 공정: 블랭킹 작업: 코일 해포, 코일공급 	○ 코일 해포시 취급 주의 1. 절반 취급 전용 장갑 2. 코일 받드는 전용 수 3. 지정된 장소에서 주 4. 받드와 포징지는 정 ○ 자동송금장치에 코일 1. 자동송금장치 주변 2. 공장직업자 외 출입 ○ 전단기 내 공구, 돌, 스크 위험. → 작업장 주변 정리	○ CO2 용접 작업시 적정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해 화재 발생시 즉시 대응 하도록 한다. ○ 용접 공간이 인구에 노출시 전광선 안면(안광) 발생 위험. → 차광도가 적합한 차광 천장 부착된 헬멧이나 헤드 실드를 사용한다. ○ 연삭시 사용시 연삭수송의 미손으로 작업자 부상의 위험 1. 연삭수송의 상태를 확인한다. (갈라짐, 이물질, 잔금, 과다비료, 규격) 2. 방호덮개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필요로 개조하지 않는다.) 3. 수송 과정에서 사전점검 하고 수송의 중상이 없었는지 확인한다. 4.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상·하부 팀 사이 손 깨임 위험 1. 작업시 제품이 용접열과 안 곳을 입고 작업한다. 2. 수송 때 용접기는 용접용 시유를 금지하고 핸드버튼을 용접열과 먼 곳에 모아 상·하부 팀 사이에 손이 안가도록 한다. 3. 당수조작기의 경우 한쪽 버튼을 일의로 고정시켜 놓고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관리감독자 : 각 라인 조장, 팀장 + 관리담당자 : 각 라인 CO2용접 책임자	- 관리감독자 : 각 라인 조장, 팀장 - 관리담당자 : 각 라인 H/W SUB 책임자	
<내출검사>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자	
공정 및 작업 ○ 공정: 제품검사 작업: 드라이보체코, 피라검사 	○ 검사 중 제품의 전도 위험. → 검사대에 제품이 바로가 출려져 있는지 확인한다. ○ 검사 중 제품을 밀 밀고서 상해 위험. 1. 제품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장갑을 꼭 착용한다. 2. 공구는 판넬과 판넬 사이에 정확히 끼이고 공구가 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제품의 앞 돌이 안전, 인구에 될 수 있으니 보안경을 꼭 착용 하도록 한다. 4. 피라검에서 제품을 손으로 푸마에서 하지 않는다. 5. 피라검이 될 검사시 바늘 끝 모양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피라검을 완료한 제품의 용접점 부위가 장갑에 걸려 제품에 상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리감독자 : 각 라인 조장, 팀장 - 관리담당자 : 김연우, 육성도, 이상원			

관리감독자는
각 공정 별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함

↓
작업자가 위험한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지원) 안전지킴이에게 뺏지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감 및 역할 강화

안전보건관리 지원활동



사장님 주관 안전발대식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활동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주관 안전지킴이 안전발대식 실시.
- 안전지킴이로 선별된 인원은 안전지킴이 뺏지를 패용하여 현장 관리자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장 안전 10계명을 기준으로, 부서별 안전지킴이가 지속적인 점검 활동 수행 및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 지원활동



- 안전지킴이는 세원물산 공장 환경 상황에 맞추어 만들어진 공장 안전 10계명을 기반으로 점검 활동 수행

- 전 직원이 시청하는 모니터(식당, 휴게실, 경비실 앞에 설치) 영상을 통해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 지원활동



- 모니터의 영상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매일 2~3회 업데이트 되는 세원뉴스를 통한 경영진의 전달사항, 안전 이슈사항, 안전점검내용, 사고사례, 야차사고 등 전파
-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식당, 휴게실, 경비실 앞에 모니터를 설치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안전지킴이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 TBM 일지를 일일 확인 결재

일일 점검 사항		[별첨: 양호->O, 정비->△, 불량->X]	
작업종류	점검사항	결과	비고
크레인용 이용한 작업	권과방지장치의 상태		
	브레이크의 상태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상태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와이어로프의 상태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와이어로프 및 후크 해지 장치 정상 상태		
	크레인 이동시 경보음 작동 및 비상정지장동 실행		
	크레인 정격 하중 확인		
프레스를 이용한 작업	와이어로프 줄결이 상태		
	신호수 주변 통제 상태		
	급정 고저시 안전블록 등 안전장치의 정상적 사용		
	잠금장치 LOTO 절차 유무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자 작업시 정상적인 절차로 작업에 임하는가? 1. 안전블록 사용		

일시	2023년 3월 9일 (07:50 - 08:00) (20:30 - 20:40)				
부서	생산부 조립반				
작업내용	프로브 용접				
장소	자 라인별 조적 장소				
■ 일일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번	2번		
○ 라인 내 출입문 안전틀머그의 상태는 양호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조작반의 비상정지 스위치의 상태는 양호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작업자가 라인내 출입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는 양호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회전기구의 보호장치 상태는 양호한가? (보호덮개 임의 탈거 및 개조 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작업장 내 소화기 배치는 잘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열기구의 사용은 적절인가? (위험시간 OFF, 분전함 차단기 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작업장 내 정리정돈 상태 (3정5행, PLT 과적재, 재물 바닥 적치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근무 안전사항	* 체크리스트 외 일제사항				
	* 안전 필요대책 * 안전조치 계획 및 확인				
TBM 04번 A 5호 공회 라이터 커먼, 방폭 기압 Mx호 크레인 인버 작동 안됨					
TBM 리더 확인		* 소속 : 조립1반 * 직책 : 반장 * 성명 : 이동규 (서명) 이동규			
		* 소속 : 조립2반 * 직책 : 반장 * 성명 : 황승연 (서명) 황승연			
■ 참석조직원(명)					
소속	이름	서명	소속	이름	서명
GRABEV	박준호	박준호	NKA	권혁용	권혁용
GRABEV	김원우	김원우	NKA	정영복	정영복
IK	최양현	최양현	NEOW	이승하	이승하
TKM	유준호	유준호	NEOW	박정민	박정민
TKM	김민준	김민준	NEOW	서정민	서정민
LKD	최정훈	최정훈	NEOW	홍민준	홍민준
LKD	김정훈	김정훈	CS7 PR	김승민	김승민
JX1004	김우규	김우규	CS7 PR	최이환	최이환
JX1004	김희동	김희동	CS7 PR	권준민	권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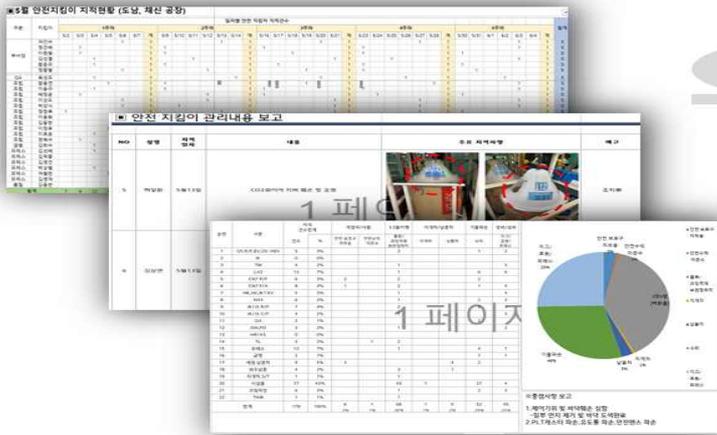
- 현장 출신의 공장관리실장이 안전지킴이와 주 1회 현장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및 독려

▣ 공장관리실장 주관 순회점검 및 간담회



- (역할 수행 평가) 안전지킴이 활동(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평가

▣ 안전지킴이 실적 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현황 파악

유해·위험요인 관리
내용 보고

안전지킴이 평가

- (역할 수행 관리) 매월 안전지킴이 활동 실적을 확인하여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임명, 해임 등 역할 수행 관리

▣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지킴이 지정	안전지킴이 활동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p>관리감독자라는 명칭 대신 '안전' 지킴이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목적성을 가지게 만들고, 모든 안전지킴이는 배지를 착용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p>	<p>안전지킴이 단독방을 활용하여 안전지킴이들 간에 유해위험요인을 즉시 공유하고 담당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p>	<p>안전지킴이 활동, 개선진행 등 점수를 취합.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을 실시하여 안전지킴이 활동에 동기 부여.</p>

안전사고 예방 활동 성과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성명	연수	내용	주요 지적사항	NO	포상 구분	성명
김현용	6	과다적재		1	최우수	배정윤 조장
				2	우수	정근배 책임메니저
				3	우수	이길호 조장
				4	우수	최재영 조장
김희정	4	1. 제어반 화재예방 2. 울타리 파손위험		5	우수	김원용 반장
				6	우수	강무창 수석교관
				7	우수	신문교 조장
				8	우수	김학수 조장

매달 주요 지적사항을 발견한 안전지킴이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

안전의식에 대한 선순환의 고리

[사례3] [주]화신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903명]

❖ 관리감독자 공정별·직위별(조·반장-중간관리자-팀장)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인지하도록 업무분장 및 역할 명확화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반별 현장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조·반장)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중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부서명	설비관리팀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 평가표</p>						작성	검토	승인
	작성자	김종길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결재</p>		
	작성일자	23.04.12	공정	공통	평균 위험도(위험도 합+수량)	7.0					
	라인/작업명	콤프레서 1실									
NO	세부공정(업무)명	분류	유해위험요인	현재관리상태	가능성 (A)	중대성 (B)	작업환경 (C)	민원 (D)	위험도 (A*(B+C+D))		
1	콤프레서실 점검 및 작업 공통	1.3 설비의 낙하, 붕괴	외주업체 부품류 이동 시 낙하 발생 → 신체 상해	안전작업계획서, 출입자명단, 혐의록 작성	1	3	1	1	5		
2		1.7 기타(파복넷거점)	외주업체 소모품 교체 시 정비 시 안전 사고	안전관리자가 사전 점검 후 메인 전원 차단	1	5	1	1	7		
3		1.3 설비의 낙하, 붕괴	외주업체 소모품 교체 시 중량을 취급에 따른 낙하 → 신체 상해	중량을 취급시 2인 1조 작업	1	5	1	1	7		
4		5.4 근로자 실수	외주업체 소모품 교체 시 안전 작업계획 미준수 → 전도, 끼임, 감전 위험	관리 담당자 지칭	1	5	1	1	7		
5		1.7 기타(파복넷거점)	외주업체 시운전 전원 투입 시 전선에 신체 접촉 발생 → 감전위험	안전관리자가 사전 점검 후 메인 전원 투입	1	5	1	1	7		
6		1.1 협력위험부분	외주업체 시운전 시 모터 회전부에 손 끼임 발생 → 신체 상해	회전부 커버 설치 확인	1	5	1	1	7		
7		2.1 걸전	외주업체 소모품 교체 시 정비시 걸전 사고	관리감독자 사전 점검 후 메인 전원 차단	1	5	3	1	9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고위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조·반장, 중간관리자)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 검토 후 안전보건조치 사항 결정

부서명	설비관리팀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등록부</p>						작성	검토	승인
작성자	김종길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결재</p>		
작성일자	23.04.12		작성 기준			12점 이상(B등급) 이상 기재					
NO	등급	위험도	라인/작업명	공정	세부공정	분류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1	A	18	콤프레서 1실	공기압축기	점검	5.1 소음 5.4 근로자 실수	귀마개 미착용으로 이상소음 발생 → 청력 장애	가동중 점검시 귀마개 착용			
2	A	18	콤프레서 2실	공기압축기	점검	5.1 소음 5.4 근로자 실수	귀마개 미착용으로 이상소음 발생 → 청력 장애	가동중 점검시 귀마개 착용			
3	A	24	수변전실	인입수전설비	점검	2.3 기타(전선과열)	특고압(22.9kv) 인입 수전설비 열화 및 절연상태 점검 → 화재사고	위탁 및 자체 안전검사 실시			
4	A	16	수변전실	변압기	점검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4 근로자실수	변압기 외함 접지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외함접지 사용	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 실시			
5	A	12	수변전실	ACB판넬	점검 및 작업	5.1 소음 5.4 근로자실수	전기 스위치 조작 중 전기 노출부에 신체 접촉	안전 작업 방법 실시 작업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실시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공정별·직위별(조·반장-중간관리자-팀장)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전사위험등록부에 등록·공유

NO	등급	위험도	부서명	관리감독자			공정(업무)명	분류	유해위험요인
				팀장	중간관리자	조·반장			
1	A	36	생산1부_용접공동	이창호 책임	김영원 선임	박병권 반장 이순석 조장/최이길 조장	잔여부용접	1.5	배기덕트 먼지 및 오일로 인한 미끄러짐
2	A	32	설비관리팀_봉동	김종진 책임	-	임성진 반장 이상근 조장/김인섭 조장	인입수전설비	2.3/ 3.6	특고압(22.9kV) 인입 수전설비 열화 및 절연상태 점검 → 화재 사고
3	A	32	설비관리팀_봉동	김종진 책임	-	임성진 반장 이상근 조장/김인섭 조장	변압기	2.1/ 3.6	변압기 절연 이상으로 인한 화재사고
4	A	30	생산1부_용접1반	이창호 책임	김영원 선임	박병권 반장 이순석 조장/최이길 조장	W100,W400,W800	6.2	로딩공정 여두움
5	A	27	생산자재팀_연하_물류	하태웅 책임	이창호 책임	이창호 책임 황용원 조장/김동지 조장	1등 물류창고	5.4	지게차 PLT 2단 적재시 실수로 인한 주변 작업자 협착
6	A	25	시험시작팀_시험파트	조희열 책임	-	-	MTS 내구시험	1.2	보호구 미착용 시 절과상등의 상해
7	A	25	시험시작팀_시험파트	조희열 책임	-	-	MTS 내구시험	1.5	유압유 유출로 미끄러짐
8	A	24	글로벌스트럭처팀	재정환 책임	안규찬 책임	장원호 반장 주석환 조장/박동석 조장	전 공정	1.4	지게차 후진으로 인한 작업자 충돌
9	A	24	설비관리팀_연하	김종진 책임	박진수 책임	이동훈 반장 우성진 조장/손정호 조장	인입수전설비	2.3	특고압(22.9kV) 인입 수전설비 열화 및 절연상태 점검 → 화재 사고
10	A	24	설비관리팀_봉동	김종진 책임	-	임성진 반장 이상근 조장/김인섭 조장	크레인	1.7/ 5.7	팬던트 비상정지 스위치 및 조작버튼 고장으로 인한 크레인 제어불가능
11	A	21	선형연구팀	-	-	-	용접	1.1	플라즈마 및 아크용접 병행 작업으로 인한 파츠 교체시 장비에 협착사고 발생
12	A	21	설비관리팀_봉동	김종진 책임	-	임성진 반장 이상근 조장/김인섭 조장	프레스	1.1/ 1.4	M/B 조작 시 정상동작 범위 이탈로 인한 협착/충돌사고 발생
13	A	21	생산1부_조립1반	이창호 책임	-	조영호 반장 이정 조장/정용하 조장	PLT OUT	1.4	개구부로 인한 로프 충돌위험 있음
14	B	21	생산팀_도장반	장진도 책임	-	이병민 반장	팩수처리장	1.1	약품 투입장치 약품 투입구 끼움으로 인한 상해
15	B	21	생산팀_도장반	장진도 책임	-	이병민 반장	팩수처리장	3.8	유해물질 보관장 누설감지 미흡

- 관리감독자 공통 업무뿐만 아니라 직위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인지하도록 업무 분장 및 역할 명확화

조·반장	중간관리자	팀장
<p>현장 안전보건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 순회점검 (1일 1회 이상) ② 작업 전, 작업 후 안전점검 ③ 정리-정돈 및 근로자 컨디션 체크 ④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통제 및 사고조사 지원 ⑤ 안전보건교육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⑥ 위험성평가 참여와 개선활동 ⑦ 신규 또는 변경 물질의 유해성 확인 및 등록 ⑧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독려 (유소견자 관리, 건강검진 등) 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참여 ⑩ 밀폐공간작업 및 외주공사 지도 점검 ⑪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참여와 개선 활동 ⑫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인지 및 관리의무 	<p>조·반장 업무 검토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팀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검토 ② 위험성평가와 개선 활동 ③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무 지원과 개선 활동 ④ 취급물질 관리 (검토, 협의, 보건조치) ⑤ 비정상 작업 안전계획서, 협의록 등의 검토 ⑥ 산업재해 조사 및 검토 보고 ⑦ 밀폐공간작업의 행정적 지원 ⑧ 외주공사 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 검토 ⑨ 기타 해당부서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적 검토 ⑩ 밀폐공간작업 및 외주공사 지도 점검 ⑪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인지 및 관리의무 	<p>안전보건업무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팀내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 승인 ② 팀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확보 ③ 현장 순회 점검 ④ 기타 안전보건업무 관리 ⑤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인지 및 관리의무
<p>부문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순회점검 • 정리정돈 확인감독 • 근로자 컨디션 체크 • 안전보건교육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확보 • 신규 및 변경 물질의 유해성 확인 및 등록 •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및 협조(유소견자 관리, 건강검진 등)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 	

-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 및 임원 주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반기별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받고 결재함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

■ 관련근거 > 중대재해저널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점검인원 > 안전환경보건팀 최은복 책임, 서동화 책임, 김동현 선임 | 업무팀 김예선 책임

■ 점검기간 > 2023.05.31 ~ 2023.06.07

■ 점검결과

구분		적정	개선필요	예외없음	소계
1	경영자대담	0	0	0	0
2	근로자의 참여	0	0	0	0
3	위험요인 파악	0	0	0	0
4	위험요인 제거 대책 및 통제	0	0	0	0
5	비상조치계획	0	0	0	0
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0	0	0	0
7	평가 및 개선	0	0	0	0
합 계		0	0	0	0

* 적 정 :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지 않지 않음
 * 개선필요 :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만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결재	담당	담당중역	부사장	사장

안전환경보건팀

- 특히, 매주 각 부서·팀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활동을 취합 및 경영 책임자와 임원에게 보고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확인 및 지도·조언

부서	생산1부 001반	반장/조장	000반장 / 000조장 / 000조장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범례] 양호: ○, 개선: ▲, 사용중지: X 보존년한: 3년				() 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직업 전 안전점검	1. 작업전 정리정돈 확인 (PT상대 및 통로확보 등)					
	2. 라인별 안전점검 결과					
	3. 지게차 방호장치 점검결과 (헤드가드, 벽리스드 경광등 등)					
	4. 기타 사용 시설 점검결과					
근로자 보건관리	1. 근로자의 컨디션 상태 확인					
	2. 부서별 질병자 이상유무 확인 (개인질병, 근골통 등)					
	3. 기타 근로자 보건관련 이상유무 확인					
보장 및 보호구	1. 보장 상태					
	2. 보호구 착용관리 - 공통: 귀마개, 안전화 - 용접: 1급 방진마스크, 보안경(전자공정) - 기타 작업조건에 맞게 착용					
				안전환경보건팀	1. 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무 점검 점검일자: 23. 5.30(화) 점검결과: 바닥 결빙에 노출으로 인한 전도위험 외 2건 2. 안전보건이벤트 실시: 5/23~24 주요내용: 안전보건사항서,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사용 실습, 스트레칭 관리 의 주관: 안전환경보건팀 후원: 리더스피크, 명천시보건소 직 3.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이행 실행점검 실시: 23. 5.31~23.6.9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점검주기: 반기 1회 점검결과: 전자결재 별도 보고 예정	
				연구개발본부	선별연구팀 18주: 5.2~3일 플라즈마-TWB 용접 조건 과제 고객 사 입회 1/0 19주: 5/12일 ~ 8/31일 신사업기술팀은 1IG 수동 용접기 대며 시험시작함 19주: 낙하 시험기 PVC 파이프 설치 21주: 고풍속레이저 PRESSURE DURABILITY 시험기 개조 보일러 공정 관리 교육 (5/3) 냉방기 교육 (5/8) 열배출장 작업 관리 장해 예방 교육 (5/8) 보호구 착용 교육 (5/22)	
				생산부문, 생산1부	ROBOT LINE 적재방법 개선으로 작업자 근골절 질환 예방(5/30) 금형 작업용 산소/UPG 이동용 대차 구조변경 (문확출 가스고체시 경사핀으로 구조변경) (5/22) 금형 작업장 및 반제품 보관장 무서리부 가림막 제거 및 센서 추가 설치 (5/30) NUT 5/MBR L/R공정 스프레이시 소회기 설치 (4E/A) (5/30) NUT P/LT-A-LINE pallet PUSHER 설치하며 작업자 업무부하 해소 (5/30)	
				생산부문, 생산2부	병동공정 프레스 및 절정 크레인 안전감사 실시 병동공정 검사 공정 안전공정서 설치 미흡 설치 병동공정 LX2라인 6/8공정 안전벨트 망카 작업 연하공장 조립1반 → 용접용 긴 안전바 보수 연하공장 용접라인 로보트 디싱 핀던트 결이대 이중 작업	

- (역할 수행 평가) 중처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시, 담당 공정·파트·부서 내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여부 평가

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평가 : 예산공장

1. 평가대상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2. 평가주체 : 사업주
3. 법적근거 : 중처법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평가주기 : 1회/반기 이상
5. 평가결과

평가 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일부 미흡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전체 미흡

구분	평가항목	판정			비고
		양호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7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여부	○		

- (역할 수행 독려) 공정·부서별 산업재해 예방 수준과 관리감독자<조·반장·중간관리자(P/L)-팀장> 활동의 적극·자발성에 따라 포상제공 및 동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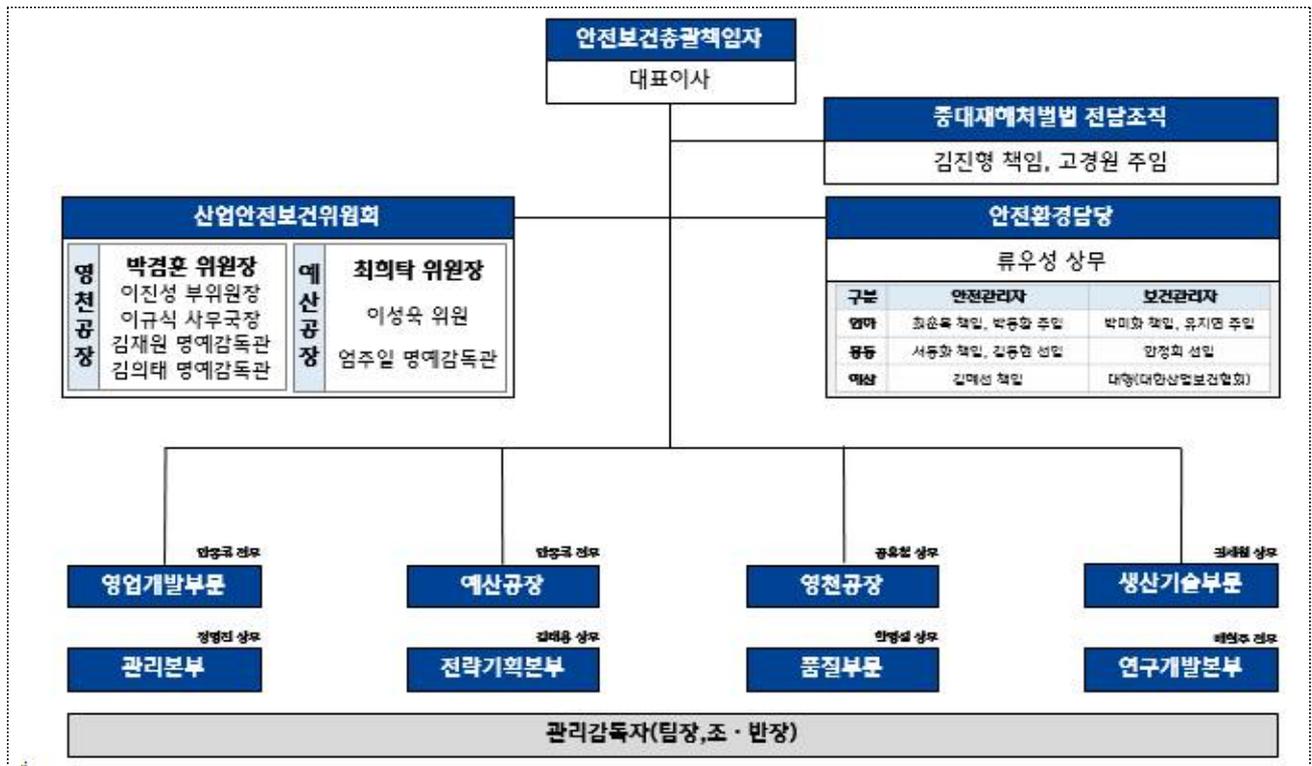
지표	비중	평가항목	평가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적극성	20%	'4대 안전수칙' 순회점검 지도견수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 준수율 ※ 타당한 사유로 인한 조치기간 연장의 경우, 개선항목으로 인정	100%	≥80%	≥60%	≥40%	40%>
	10%	연간 T.B.M 활동 횟수	≥80회	≥60회	≥40회	≥20회	20회>
	15%	T.B.M 활동 영상 접수 * 평가기준 : 직원 참여도, 현장반영 여부(실효성), 적극성 등 * 평가자 : 임원진(선정필요)	1등	2등	3등	4등	그 외
기여도	20%	연간 물리적 잠재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활동	≥20건	≥15건	≥10건	≥5건	5건>
	25%	연간 불안전 행동 발굴 및 개선활동	≥20건	≥15건	≥10건	≥5건	5건>
발전성	10%	화신의 안전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모든 물리적/관리적 활동	≥5건	≥3건	2건	1건	0건
감점(-)		산업재해 발생 1건당 -1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건은 -3점)					
가점(+)		근로자 1명당 +0.05점 부여(: 근로자 수에 따른 위험도 증가)					



□ 기업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 (안전관리 조직 재정비) 전담조직에서 각 사업장에 시달한 안전 정책 및 업무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닌 각 부문·공장·본부장(상무이사)이 관리감독자에게 지시하도록 조직 재정비

- ※ ▲ (기존 업무 체계) 전담조직 →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 (변경 업무 체계) 전담조직 → 각 사업장 부문·공장·본부장 → 관리감독자



- (임원진 교육 및 결의대회) 대표이사와 임원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결의대회를 통한 활동 독려



- **(역할 수행)** 안전다짐 결의를 통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다짐을 하고, TBM 활동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지속 관리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역할 수행 확인)** 전문기관은 안전회의(주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에 참여하여 관리감독자 중심 역할 수행의 적정성 확인·지도
- **(역할 수행 평가)** 중대법 시행령 제4조에제5호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점검 현황 등 업무 충실성 평가(반기 1회)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한국클래드텍)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평가표 (2023년 상반기)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관리 감독자		1. 시업장 내 관리감독직기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0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0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0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0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0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0
		7. 333활동 등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관리의 적정성			0
		8. 333활동 등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활용(TBM) 운영 관리의 적정성			0

* 평가 주기: 반기 1회 이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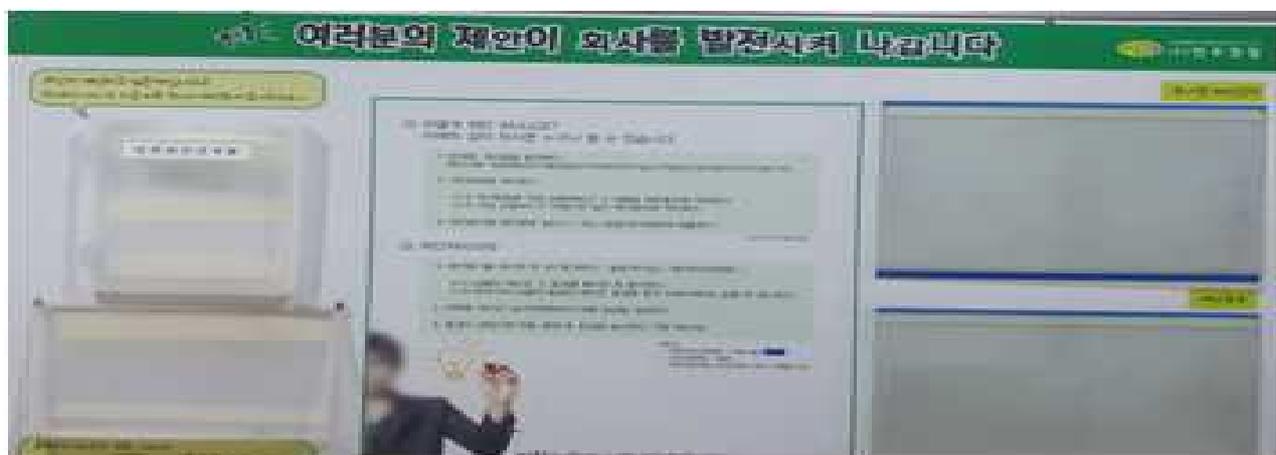
- **(역할 수행 독려)** 경영책임자는 실적이 우수한 부서, 근로자에 대한 포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사례2] [취]전우정밀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72명]

- ❖ TBM활동, 현장관리전산시스템(MES), 사업장 순회점검, 개선제안 및 신고함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파악·작성
- ❖ 경영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우수 관리감독자 포상 제도 운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TBM활동, 현장관리시스템(MES), 사업장 순회점검, 개선제안 및 신고함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 및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담당자
○ 공정: 입-출고 작업: 지게차 	1.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로 유자격자 운전 → 지게차 주·정차 시 시동키 분리 교육(매일) 2. 지게차 운행 중 보행자 충돌 위험 → 지게차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고,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3. 지게차 사내 운행 제한속도 미지정 → 사내 운행제한 속도 지정(10km/h 이하), 게시 및 교육	- 관리감독자: 김현준 - 관리담당자: 김태중
○ 공정: 입-출고 작업: 화물차량 	1. 상,하차 작업 시 차량 불시 이동에 의한 부딪힘 위험 → 화물차량 정차 후 시동off, 사이드브레이크 사용 바퀴 고임목 설치	- 관리감독자: 김현준 - 관리담당자: 김태중
○ 공정: 코일 입고 작업: 크레인 작업 	1. 크레인 운반 작업시 물체 낙하위험 →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제한 작업자 머리 위로 운반금지 작업자 안전모 착용	- 관리감독자: 권영민 - 관리담당자: 송성태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보건 조치사항 결정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대상공정 : 650톤 동기화 라인		개선일자 : 2023.01.27		대상공정 : TRANSFER라인		개선일자 : 2023.02.13	
개선전 ⚠	현재 위험도	개선후 ✅	현재 위험도	개선전 ⚠	현재 위험도	개선후 ✅	현재 위험도
	빈도 Ⓛ 3		빈도 Ⓛ 2		빈도 Ⓛ 2		빈도 Ⓛ 1
	강도 Ⓛ 3		강도 Ⓛ 3		강도 Ⓛ 4		강도 Ⓛ 4
	위험도 Ⓛ X Ⓛ 9		위험도 Ⓛ X Ⓛ 6		위험도 Ⓛ X Ⓛ 8		위험도 Ⓛ X Ⓛ 4
	위험형태		위험형태		위험형태		위험형태
	기계적 요인		기계적 요인		기계적 요인		기계적 요인
	요청 작업자		정수자		요청 작업자		정수자
	정유형		김진숙		최환희		권영민
개 선 이 유	6호기 하부로 들어가 말림 위험			개 선 이 유	800톤 1호기 측면 위험부 노출로 인한 끼임 위험		
	진입방지표지 부착				위험부의 개방구에 대한 아크릴 카드 설치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관리감독자에게만 안전관리 및 생산업무를 부여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과중된 기존의 제도에서 각 부서원, 선임, 기장들에게도 안전관리 업무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직위	역할
제조이사	-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생산차장	-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의뢰
기장, 선임	- 근로자 일일 점검 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결정 - TBM활동 실시(매일, 작업 전) - 프레스,로봇 등 비정형작업 시 현장관리 (안전블럭사용, 전원차단 확인, 입간판 설치 확인)
근로자	- 현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일일 점검 실시 - TBM활동 실시(매일, 작업 전)

JEONWOO			
문서번호	인사PART230323-001	작성일자	2023-03-23 11:49
작성부서	인사PART	작성자	김태호
목적	이사 <input type="checkbox"/> 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현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합승	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김현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박종석/김종도/이재훈/김진홍/김경희/김우희 수상실조리스트 수정 내역보기		
비고	2023년 위험성평가담당자 사외 교육 신청 건		

표제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검토후 재가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2023년 위험성평가담당자 사외 교육 신청 건

2. 목적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받는 법정교육

3. 교육 일정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연간 16시간)

- 1) 2023년 5월 22일 - 5월 23일 (김태호)
- 2023년 5월 30일 - 5월 31일 (남준재, 김경희, 권영민)
- 2023년 6월 20일 - 6월 21일 (김현준, 김진숙)

- (역할 수행)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TBM활동 실시, 모든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관리전산시스템(MES)으로 기계 담당자와 이상 유무 점검 실시

일일 안전 T.B.M 일지

본 TBM 장소 : 생산팀 중앙동료
본 일자 : 2023년 5월 15일

관리감독자		계정이사	
[인]		[인]	
관리감독자		비고(부적합자 등)	
개인 보호구 착용상태		○	
건강상태		○	
작업 현황 파악			
순번	일명	시명(장소)	종명
1	이동	이동	11
2	이동	이동	12
3	이동	이동	13
4	이동	이동	14
5	이동	이동	15
6	이동	이동	16
7	이동	이동	17
8	이동	이동	18
9	이동	이동	19
10	이동	이동	20

발발방지책(관리감독자가 조목/전라 및 근로자안전 담당)

작업현황(작업내용)

조작 중 돌출물 제거 후 주행 세팅 시에 미반대 방지 차가 과속으로 전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 방향 변경 시에 차속 저감 후 진행을 위한 안전 확인을 위한 차속 저감 PRESS 버튼에 세팅 및 점진적 이력관리로 작업준비반

TBM 시, 근로자에게 고지사항 및 견인 요청

위험요인

1. 도로운 안전 바퀴 미고여움
2. 차체와 승객을 분리하는 경우

개선대책

1. 차에 관하여 점검을 한 후 확인
2. 브레이크 관련으로 점검하여 확인
3. 세팅을 잘 함으로 안전을 확보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TBM일지와 예산 편성, 개선 방안,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 등을 확인·점검

보고서2

문서번호	생비PAR1230322-004	작성일자	2023-03-22 16:56
작성부서	생산기술부	작성자	김진욱
과장	차장 담당 이사 사장	승인자	이종우/이재훈/김태희/김현준/주필/박성재 외 3명
제 목	2023년 2월 생산기술부(생비파트) KPI 실적 보고		

표제외 과 관련하여 생산기술부(생비파트) 2023년 2월 KPI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이 리 —

1. 제 목
생산기술부(생비파트) 2023년 2월 KPI 실적 보고

2. KPI 실적 현황

- F/Preel 개선 및 C/T 단속 개선
목표 : 7건/월 (84건/부)
실적 : 7건/월
- 생비 유지 보수 사용금액
목표 : 1,450만원/월 (1억7,500만원/부)
실적 : 219만원/월
- 생비 비가동 시간 단속
목표 : 60 시간 미만/월 (720시간 미만/부)
실적 : 86.4시간/월
- 모진 실적

예달조건	실시율	100%	1월				2월				비율
			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고장 수리시간 (MTTR)	1hr	100%	112	152	182	53	45	40	40	184	20%
평균고장 발생가격 (MTBF)	240hr	100%	143hr	152hr	100%						

- 예산 집행
목표 : 14,840,000원 (2월) / 합계 : 178,253,000원 (4월)
집행 : 2,211,000원 (2월) / 합계 : 17,530,500원 (4월)

- 2월 구매 금액 : 1,106,000원 (2월~2월)
출고 금액 : 1,880,000원 (2월~2월)
재고 금액 : 88,221,900원 (2월말 기준)

3. 업무 요약

- 개선
- ▶ 작업드림 소재관리 리포트 상하차동 모터 인버터 적용-200

- (역할 수행 평가) 관리자감독자가 작성한 TBM일지 및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업무 평가(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평가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강현구 
 피평가자 : 관리감독자 권영민

평가기준

우수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			비고
		우수	보통	미흡	
관리 감독자 (산안법 제16조)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여부	○			
	해당 작업 발생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여부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여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 조연에 대한 협조 여부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여부	○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작성 및 관리의 적정성		○		
	TBM 실시 및 일지 관리의 적정성	○			
근로자들의 작업 시작 전 작동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상태 체크 여부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주기는 반기 1회로 한다.

- (역할 수행 독려) 경영책임자는 실적이 우수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포상 지급 제도 운영



[위탁 사례3] ㈜에스피환경 [업종: 제조업 폐기물 재생처리, 근로자 수 : 26명]

- ❖ 관리감독자에 의한 근로자, 중장비, 외주공사에 대한 현장 밀착 관리
- ❖ 경영책임자 평가를 활성화하여 매월 현재 수준 평가, 개선, 보완하고 우수 안전개선 기여 근로자에게 포상 제도 운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매일 TBM 및 안전점검, 정기 안전협의체,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외주업체 안전 평가표, 반기별 전문기관 점검 결과 확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최초

상시

- 기본 KRAS 위험성평가시스템 (빈도*강도)
- 내 작업장 위험분석(JSA)을 상시평가 방법으로 운영
- 월-주-일 단위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안전활동
- 월(月): 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 근로자 안전제안 등 안전 회의 진행
- 주(週): 대표 및 안전담당자 합동안전점검 회의
-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공유 ※ 근로자(작업반장) 참석 필수

TBM 및 안전점검

안전 점검의 날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안내

1.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의견 제시
↳ 의견 제시자: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인원
2. 의견 제시 방법
위험한 요소에 대해 사진음 찍고 첨부하여
원자 / 향소 / 위험요인 작성,
담당자 E-mail 및 Mobile 전송

※ 제안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의견이 채택되어 당시 안전 개선 작용 시 포상 권도

○ 의견 취합 담당자
에스피환경 상선철 : 책임 관오대

E-mail : pd4004@sampyo.co.kr
Mobile : 010-4194-3754

'지키는 안전, 커지는 행복'

SP Environment

공사업체 사업장 안전 평가표

사업장명	영선 정세종	회사명	현대원기종명	대표자	평가자	점수	비고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기준	점수	비고	
안전계획 (10 점)	1.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점	5	양호	보통	미흡	
	2. 위험성 평가 적절성	5 점	5	양호	보통	미흡	
안전활동 (30 점)	3. TBM 일시상태	10 점	10	양호	보통	미흡	
	4. 안전교육 참석 및 실시율	5 점	5	100%	90%	80%	70%
	5. 안전행위 적절성	5 점	5	양호	보통	미흡	
안전태양 (30 점)	6. 안전행위 적절성	5 점	5	100%	90%	80%	70%
	7. 위험행위 및 상태	10 점	10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안전사고 (30 점)	8. 안전기준 준수 및 탈조도, 개선활동	20 점	20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중대재해	15 점	15	0 건	1 건 이상		
가감	10. 일반재해	15 점	15	0 건	1 건	2 건	3 건 이상
	11. 공사 업체 링크	-	-	1.5	1.0	5	0
	12. 우수 공사 업체 포상 및 본사지원	-	-	연장 +3	연장 +1		
				연장 +0.5			

정밀안전진단 Wrap-up Report

○ 위험요인 : 원천지배
○ 위험도 : 2024. 07. 07.
소속 : 엘스피엔비시스템 및 사립
직책 : 평가자
장기명 : 장진혁

| No. | 위험 |
|-----|----|----|----|----|----|----|----|
| 1 | 위험 |
| 2 | 위험 |
| 3 | 위험 |
| 4 | 위험 |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월간 안전회의를 통하여 안전위탁기관의 정기안전관리 상태보고서와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보건 조치사항을 결정

- (수행 지원) LOTO, 작업허가 등의 매뉴얼 지원으로 안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LOTOTO 메뉴얼

LOCK OUT / TAG OUT / TRY OUT

- 락아웃(LOCK OUT)
 -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 수리, 보수 점검 및 유지보수 시 위험에너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에너지 격리 장치(전원 버튼, 차단기 등)에 자물쇠 같은 시간장치를 이용하여 위험에너지를 관리하는 안전작업 방법
- 태그아웃(TAG OUT)
 - 포리표와 같은 중요한 안전경고, 주의 표시로서 함부로 제거하거나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 트라이아웃(TRY OUT)
 - 작업 중 가동되지 않도록 설비 동작 여부를 한 번더 확인하는 방법

LOCK & TAG 장치 종류



자물쇠(패드락) 잠금장치
차단기 손잡이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TAG 표시

작업허가 매뉴얼

1. 목적 및 작업허가 대상

1.1 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허가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2 작업허가

※ 환경자원안전파트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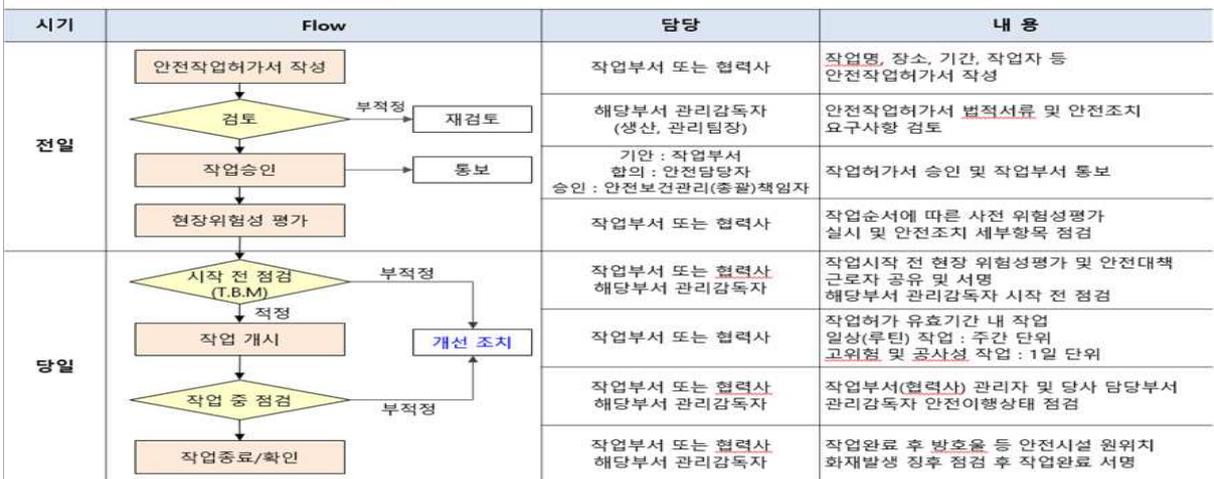
- 구분 : ① 계획/돌발, 정기 보수시 ② 대보수, 외주공사시
- 대상 : 사내 - 외 협력사 / 에스피네이저 근로자(직업 포함)
- 작업허가시 서류
 - 위험작업허가서, 현장수시위험성평가(JSA), TBM일지, 장비작업 계획서(사유발생시), 협력업체 적격성 평가(외주공사시) 등
- 작업허가 서류 제출 시기
 - 계획, 정기 보수시 : 작업시작 2일전 16시까지 제출 통보
 - 돌발 보수시 : 작업시작 전 발행 (작업중,후 안전서류 제출 통보)
 - 대보수, 외주공사시 : 작업시작 3일전 16시까지 제출 통보 (돌발 외주공사시 작업시작전 작성 必)

작업허가 구분	제출 주기	내 용	대상 작업
일상 작업	1주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루틴한 작업	사업장 내 공종별 모든 루틴작업
비정형 작업 및 고위험 작업	매일	공사, 긴급 보수, 고위험 작업 등 일상적이지 않은 비정형 작업	설비의 보수, 정비, 설치, 절거 등 공사 및 고위험 작업 (고소, 화기, 밀폐공간, LOTOTO, 증장비 작업 必)

※ 작업허가서 작성 시 필수 제출 서류

구 분	작성 시기	내 용
위험성평가(JSA)	작업허가서 작성 후	작업 투입 전 현장에 대한 <u>작업순서별</u> 위험성평가 실시
T.B.M 일지	작업 시작 전	
장비작업계획서(사유발생시)	작업허가서 작성 후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안전대책 공유
협력업체 적격성평가(외주공사시)	작업허가서 작성 전	
		+
		작업시작전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2. 안전작업 허가 Flow



- (역할 수행) 외부 작업 시 업체 적격성 평가 실시, 공정 및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List를 기반으로 맡은 역할을 진행

공사업체 적격성 체크리스트(등록업체)

회사명	OO엔지니어링	대표자	홍길동
대표전화번호	02-0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220-00-00000
이메일	abc.OO.com	산재보험 가입번호	220-00-00000-0
주소(도로명)	경기도 OO시 OO구 OO길 00	공사 기간	2022.01.27 ~ 2022.02.28
공사 개요	삼표OO OO공장 ABC설비 증설 공사		
*) 본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한 작성일자기준 1년간 유효합니다.			
		작성일자: 2022.01.27	계약 불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0	D	평가 자료	비고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관리 조직	본사/사업장 전담(또는 겸직) 안전조직 구성 여부	Yes/No		1. 안전조직도 및 R&R	
2.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 매뉴얼/규정 수립 및 적정 여부	Yes/No		2. 안전보건관리규정	
3.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Yes/No		3.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충족 시 계약제한
B. 재해발생수준					
4.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19년 평균 제조업 재해율 0.72)	0.72		4. 산업재해율 확인서	
5. 중대재해건수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건수	<1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고용노동부)	
C. 안전계획					
6. 위험성 평가	문서화된 위험요소 인지, 위험성평가서	Yes/No		5. 위험성평가서	
D. 안전관리비					
7. 환경안전평가	전반 사업장 안전평가 점수	값 입력		사업장 평가표	삼표 기입 (40점 환산)

"No"로 입력된 항목은 공사 시작 전까지 개선된 결과(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출처: 공사발주부서(사업장 생산팀 or 설비팀 등) 책임(담당)자

검토자 성명: 000 (인) 소속/직위: 주에스피환경OO OO팀 / 차장 검토일: 2022. . .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관리 조직역할
안전보건관리 규정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위험성 평가표 확인**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작업위험분석	NO	ISA-004	문법호	인사팀(0104)	
작업명	제품(대체연료) 생산(고위험)	Date	'23.07	Rev	1 사유
일도구	너클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갈무리	안전장치	유도원, 안전도, 안전화, 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각반		
일내용	대체연료 생산 작업				

작업순서	위험요인	안전대책
1. 파쇄기 1차 파쇄 (컨베이어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 발생으로 건강장해 (호흡기) 발생 위험 날카로운 이물질이 튀어 찰람 위험 회전체 찰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구 착용상태(방진마스크) 확인한다. ①-1. 보호구 착용상태(보안경) 확인한다. ②-1. 파쇄기 작업반경 외곽에 접근 금지한다. ③-1. 방호울, 플루드 스위치 정상작동 확인한다. ④-2. 가동 중 컨베이어 발트 인입 접근을 금지한다.
2. 트롬멜 가동 (컨베이어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카로운 이물질이 튀어 찰람 위험 회전체 찰람, 찰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호구 착용상태(보안경) 확인한다. ②-1. 가동 중 트롬멜 회전체에 접근 금지한다. ③-2. 방호울, 플루드 스위치 정상작동 확인한다. ④-3. 컨베이어 발트 인입 접근 금지시킨다.
3. 디스크 스크린 (컨베이어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체 찰람 위험 조각 판질 강판 및 화재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 디스크 스크린 회전체 가동중 접근 금지시킨다. ②-1. 방호울, 플루드 스위치 정상작동 확인한다. ③-2. 컨베이어 발트 인입 접근 금지한다. ④ 조차 판질 이물질 제거, 마찰동시 전기 담당자가 확인한다.
4. 분쇄기 2차 파쇄 (컨베이어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에 의한 모래 파쇄 위험 필수 공구로 물체 걸림에 넘어짐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쇄기 모래를 1일 점검하고 청소한다. ② 분쇄기 주변 관계자 이르는 접근 금지한다.
5. 이물질 지게차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에 의한 찰람 위험 지형, 장애, 인입 충돌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 규정속도 10km/h 를 넘지 않도록 확인한다. ②-2. 보호구 착용상태(안전모)를 확인한다. ※ 소반 가지에서 지형과 경사로 경사로 작동시대를 확인한다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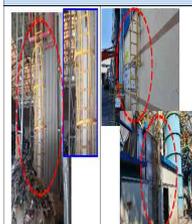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는 개선 방안,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등을 안전 게시판 공표하고 전산화된 실적 확인, 매월 주요 지표관리

개선활동 결과서 및 실적 전산 입력



작성 담당	최대수/최영경/김민수	개선활동 결과서	작성 일자	김영주/최영경/김민수
점검자	홍기영/김민수	작성가	김영주/최영경	
점검일자	2023.11.19	작성일자	2023.11.20	

개선전



개선후



수직이동 장비물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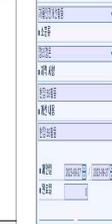
20년 물 펌프 제정(내부 유류 흐름도 등) 안전 = 6회(정기)



물류기동 장비물류기 고지



물류기동 장비물류기 고지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배점	15점	12점	10점	8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진행률	100% 이상	91% 이상	81% 이상	71% 이상	61% 이상	51% 이상	41% 이상	31% 이상	21% 이상	11% 이상

안전 주요지표 관리

측정항목	세부성과지표	배점	평가기준					
			배점	15점	12점	10점	8점	6점
선행지표 (80)	중대 위험요소 개선	15점	배점	15점	12점	10점	8점	6점
	부문 내 중요 위험요소 개선활동 진행률		진행률	100% 이상	91% 이상	81% 이상	71% 이상	70% 미만
	선행지표관리	10점	배점	10점	8점	6점	5점	4점
	주기적인 안전 선행지표 관리		진행률	100% 이상	91% 이상	81% 이상	71% 이상	70% 미만
	분임조 활동	15점	배점	15점	12점	10점	8점	6점
분임조 안전활동 성과 달성률 - 안전제안, 아자사고, 회의참석 등		진행률	100% 이상	91% 이상	81% 이상	71% 이상	70% 미만	
대외기관 협력	10점	배점	10점	8점	6점	5점	4점	
노동지침, 안전공단, 소방서 등 접촉 활동(목표 vs. 실적)		개선 건수	100% 이상	91% 이상	81% 이상	71% 이상	70% 미만	
Audit 평가	상,하반기 Audit 평균 점수	30점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평균점수	82점 이상	80점 이상	78점 이상	76점 이상	76점 미만
후행지표 (20)	재해지표	산재사고(특고직/협력사 포함)	배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3년 평균 재해 건수	레미콘	3건 이하	4건~6건	7건	8~10건
	중대재해	-30점/건	골재	2건 이하	2건~4건	5건	7~8건	9건 이상
			물발	0건	-	1건	2건	3건 이상
철도			0건	-	1건	2건	3건 이상	
콘크리트			0건	-	1건	2건	3건 이상	
대관점검	법규 위반 건수	-1점/건	건설소재	1건 이하	2건	3건	4건	5건 이상
			환경자원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SPC	3건 이하	4~6건	7건	8~10건	11건 이상
계		100점	선행지표(80%) + 후행지표(20%)					

○ (역할 수행 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반기별 관리감독자 평가

사업주 관리감독자 업무평가

관리감독자의 평가기준

역행률	역행수준	조치내용
85% ~ 100%	업무수행 역량 우수	우수한 관리감독자에게는 포상 수여
75% ~ 84%	업무수행 역량 양호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60% ~ 74%	업무수행 역량 보통	
60% 미만	업무수행 역량 부족함	개선계획 수립, 경명해명서 보고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내용
관리감독자 (단인별 채점표)	1. 개인별 ANR 지정 여부	① 역할과 책임이 명시된 개인별 ANR 지정 여부 개인별 ANR 지정, 서명 및 보관 상태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2.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과 관련된 기계·기구, 장비의 안전보전 점검 및 이상 판별 확인	② 정기 안전점검결과 및 TBM 안전 점검 점검결과에 내용이 반영되어 정기 안전 점검 결과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직역분류·복합성 및 임종장치의 점검과 그 기록 사항에 대한 교육지도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및 TBM 안전 점검 점검결과에 내용이 반영되어 정기 안전 점검 결과 확인 TBM 안전에 교육지도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4.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 및 안전제어에 관한 보고 및 이해 대한 교육과정 여부	④ 안전교육 보고 및 교육과정 여부 확인 안전제어 업무 시 교육보고 및 교육과정 실시 여부 확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5.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의 직역장 평가결과 및 복수 직역에 대한 평가 결과 여부	⑤ 정기 안전점검결과 및 TBM 안전 점검 점검결과에 내용이 반영되어 정기 안전 점검 결과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치에 대한 검토 여부	⑥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치에 대한 검토 여부 안전보건관리자 관리보고서 관리감독자 검토상태 평가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관리감독자 (단인별 채점표)	7. 위험성평가를 위한 관제·위험요인 파악 등 개선조치 시행 상태 여부	⑦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 확인 위험성평가 모든 관제(위험요인) 확인 평가 대상 관제(위험요인) 확인 문제해결요인 파악 상태(위험요인 조치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위험성 평가표) 확인 개선상태 수정 및 실행 상태(개선상태 수정 및 실행표) 확인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8.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리	⑧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교육장시 등 증명자료 확인하여 교육 횟수 파악 ○ : 있음 △ : 미비 × : 해당 없음

관리감독자 평가표

구분	항목명	평가	평가결과		비고
			점수	비율	
역행률	역행수준	조치내용			
1. 개인별 ANR 지정 여부	○	○	5	5	
2.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과 관련된 기계·기구, 장비의 안전보전 점검 및 이상 판별 확인	○	○	5	5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직역분류·복합성 및 임종장치의 점검과 그 기록 사항에 대한 교육지도	○	○	5	5	
4.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 및 안전제어에 관한 보고 및 이해 대한 교육과정 여부	○	○	5	5	
5.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는 직역의 직역장 평가결과 및 복수 직역에 대한 평가 결과 여부	○	○	5	5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치에 대한 검토 여부	○	○	5	5	
7. 위험성평가를 위한 관제·위험요인 파악 등 개선조치 시행 상태 여부	○	○	5	5	
8.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리	○	○	5	5	
합계			40	100	

○ (역할 수행 독려) 관리감독자 주관의 분임조 안전개선활동 경진대회를 참여하여 우수한 개선활동을 실시한 조에게는 포상

분임조	개선 주제	심사위원			합계 점수	상장	상금 (상금권)
		국안호 사물	최상구 심부	김명민 심부			
보급자리	스프링 문닫자물 발문 고정장치 자동 제거	96	94	98	288	최우수상	100만원
리세미틀	베어데일링 부양호체 본체점검기 설치의 건	95	90	90	275	우수상	70만원
사이클론	베가스 배관 화재 긴급 스톱라임 설치	90	88	95	273	장려상	40만원
어벤저스	우레탄 재질의 벨트 크리너 변경 설치	91	85	85	261	장려상	40만원
안전안전	안전케노피 워 반사경 설치의 건	89	83	85	257	장려상	20만원
말청	위험공간 출입 시 위험 발암 센서 설치	89	78	84	249	장려상	20만원
이노베이션	공작기 상부작업시 후방방직시절 개선	88	81	79	248	장려상	20만원
산바람	지게차 전을 발반 제작	89	73	82	244	장려상	20만원



3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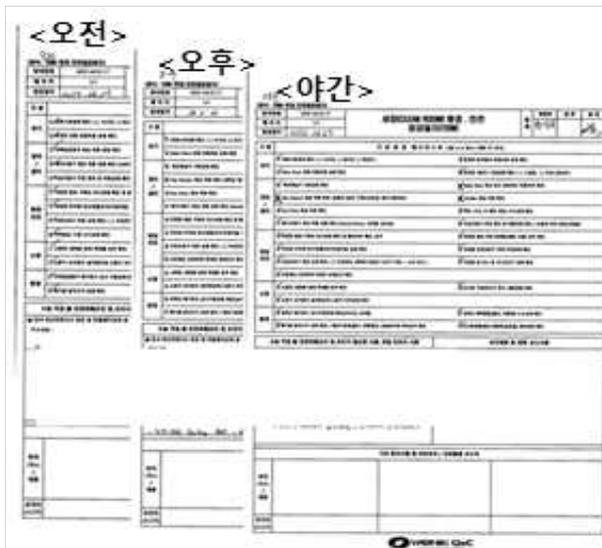
(사례1) 원익큐엔씨 (업종: 반도체용 석영유리 세정, 근로자 수: 80명)

- ❖ TBM 점검 및 관리감독자 간 소통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PSM Patrol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TBM 점검 실시(각 조별), 안전보건 공모전 및 동종업계 사고사례 등을 통해 내용 파악 후 SHE 시스템 등록

TBM 점검일지를 통해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후 직원들에게 내용 전파하고, 교대 시 관리감독자 간 소통을 통해 SHE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 공유(점검일지 현장 게시)



매년 안전보건 관련 공모전을 통해 종사자 의견 수렴 / 동종업계 사고에 현장 전파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과 직원들의 안전 보건 의식 개선을 위하여 2021년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직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ONIK QnC
안전보건 공모전
2021.12.01-12.15
USER CREATED FACTORY

공모주제
1.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 제안
2. 안전환경 슬로건 및 안전환경10계명 공모

응모방법
그룹웨어 내 공모 방법 및 상세 내용 게시
접수처: 원익큐엔씨 경영혁신본부 품질혁신팀
이윤경 님 (yjlee04@wonik.com)

참가자격 및 일정
안전보건을 생각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전사)
접수: 2021년 12월 01일(수) ~ 12월 15일(수)

결과 및 내용참조
결과발표: 그룹웨어 발표 2021년 12월 30일(목)
그룹웨어: <https://gw.wonik.com/>

불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전

공모전 진행 방법

1. 진행 기간 - 2022.11.16 ~ 2022.12.14 (4주)
2. 참여 범위 - 원익큐엔씨 전 임직원
3. 주제 - 불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4. 시상 내역:
 - (1) 1등(1명): 100만원
 - (2) 우수상(2명): 50만원
 - (3) 장려상(3명): 30만원
 - (4) 격려상(1명): 50만원

-유형: 개인/팀무관 (최대 3명)
-대상: 안전보건 분야
-제출: 원익큐엔씨 경영혁신본부 품질혁신팀 (12월 15일(수) 18:00 전까지)
(상세지침서)

사례1. 불산 누출(1)

● 불안전 피복으로 인한 불산 누출사고

- 사고원인: 피복 장구시 강
- 사고발생: 작업 중 불산 피복이 벗겨짐
- 사고결과: 불산 침투에 따른 피부 화상

대책 방안 (타산지식)

1. 안전장비 착용할 수 있는 수직셔츠의 설치
2. 장구 장구로 주머니를 안전장구 설치
3. 작업 후 즉시 샤워하는 방법 개선

● 피복장비-부안 장

● 사고발생: 불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셔츠의 중계제 안전장구 착용
피복의 교체 가능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자체 운영 중인 SHE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자 등 현장관계자가 참여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공정별-단위 작업별 절차 및 기본 정보 파악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section of the WONIK system. It displays details for a job titled '안전보건정보'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The job is categorized as 'Chemical 드럼 입고' (Chemical Drum In) and is performed by '입고 물류 상 하차' (Loading/Unloading Logistics). The system lists safety measures, including handling procedures for chemical drums and the use of safety equipment like wing body doors. It also includes a '3년간 재발방지책' (3-year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 section with various checkboxes for safety protocols.

파악된 안전보건정보를 토대로 단위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List 작성

This screenshot shows the '유해위험요인' (Hazardous Risk Factors) list. It details the '입고 물류 상 하차' (Loading/Unloading Logistics) process, specifically the 'Chemical 드럼 입고' (Chemical Drum In) step. The list identifies hazards such as '화학물질 취급' (Handling of chemicals) and '중량물 취급' (Handling of heavy objects). It provides a structured overview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is task, including the specific safety measures and standards that must be followed.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공정별·교대조별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PSM Patrol 평가 실시

■ 제조1팀 63명 中 11명 관리감독자 임명(교대조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생선1그룹		공정관리 1그룹		육질1그룹	
과장	김이	그룹장	박이	그룹장	김정
대리	이난	대리	박이	과장	김정
사원				사원	김정

입출고 / 약액관리		세정 / 관리		직무 / 포장	
직무	성명	직무	성명	직무	성명
조장	김이	조장	김정	검사 A	박이
입출고 A	김이	1~2 Bay	민이	검사 B	김이
	김정	3~4 Bay	유이		박이
		5 Bay	자이		최이
		6 Bay	윤이		
		7 Bay	이양		
		Wafer </td <td>양이</td> <td></td> <td></td>	양이		

조장		조장		조장	
김이	김정	김이	김정	김정	김정
이최	하이	하이	하이	이윤	이윤
	서이	서이	서이	이소	이소
	김박	김박	김박	이준	이준
	박최	박최	박최	최이	최이

조장		조장		조장	
한배	한이	한이	한이	한이	한이
배여	권승	권승	권승	김민	김민
	황분	황분	황분	김민	김민
	김이	김이	김이	김민	김민
	이민	이민	이민	김민	김민

■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PSM Patrol 평가 실시

- 일별, 주간, 격주, 월 단위 현장 Patrol 준수사항 점검 후 개선 진행
- 문제점 도출 시 관리감독자(팀장/그룹장/조장) 미팅 후 개선 방향 모색
- 각 공정별 96개 평가 항목으로 개선 현황 이력 관리 中

구분	10월	9월	8월	7월
생선1팀	98.1%	96.8%	96.8%	96.8%
공정관리 1팀	98.1%	96.8%	96.8%	96.8%
육질1팀	98.1%	96.8%	96.8%	96.8%

구분	10월	9월	8월	7월
생선1팀	98.1%	96.8%	96.8%	96.8%
공정관리 1팀	98.1%	96.8%	96.8%	96.8%
육질1팀	98.1%	96.8%	96.8%	96.8%

구분	10월	9월	8월	7월
생선1팀	98.1%	96.8%	96.8%	96.8%
공정관리 1팀	98.1%	96.8%	96.8%	96.8%
육질1팀	98.1%	96.8%	96.8%	96.8%

- (역할 수행 지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및 공정별 안전 우수자 제안제도 실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응급처치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관리감독자 권한으로 안전 우수자 선정

- 매월 대상자 선정 후 포상 진행(3만원/월)
- 안전우수자에 대해 그룹웨어 게시

[구미, 안성] '23년 4월 안전우수자 게시 件 : 일반공

등록자 : 허상수

23년 4월 안전우수자_구미, 안성.pdf (6.371KB)

구미, 안성 사업장 안전우수자 포상 게시 예정입니다.

1. 포상 대상 : 23명

no	안전우수자	사번	사유	부서명	비고
1	홍정욱	00969	소파기 점검 우수	7FL팀	구미
2	안종영	20820	보호구 착용 우수		
3	김성수	00296	위험 지역 정리 및 점검 우수		
4	유종욱	00763	비상사태기 점검 우수		
5	장수필	00604	시설물 점검 우수	884CH팀	
6	윤영환	01299	보호구 착용 우수		
7	최상준	01316	보호구 착용 우수		
8	자인홍	00317	보호구 착용 우수	C&C 제조1팀	
9	김동호	01001	현장 7시 일일 점검 우수		
10	윤인호	20873	보호구 착용 우수		
11	이지후	20340	안전 SOP 준수	C&C 제조1팀	
12	윤영환	20668	보호구 착용 우수		
13	박근아	21174	비상 사태 대응 우수		

S A F E T Y
M A N

■ 선정 일자 : 23년 4월 24일 (월)
 ■ 선 정 자 : C&C 제조1팀 이지후 님
 ■ 선정 사유 : 안전 SOP 준수
 ■ 발 물 자 : C&C 제조1팀 김성규 님

WONIK QnC
Quality Partner

○ (역할 수행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반기별 안전환경 업무 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및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등 실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비고
관리감독자 (안전팀 제외)	작업장 내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하는 기간 및 운영에 기록 유지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의 소속부 고지서 및 직전 직종별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직위로 부여하며, 업무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직위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 (역할 수행 독려) 안전환경 MBO 평가를 통해 우수 팀에 대해 인사 고과 반영

반기별 안전환경 업무 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및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등 실시

1. 점수 반영 기준: 고유과제가 아닌 가감점 방식으로 적용, 절대 평가 기준

구분	O	E	M	N	U
MBO 점수 기준	115점 이상	105점 이상 ~ 115점 미만	100점 이상 ~ 105점 미만	100점 미만 ~ 95점 초과	95점 이하
가감점	+1점	+0.5점	0점	-0.5점	-1점

2. 평가 항목

- 교육 및 훈련 참여
- 잠재위험 Risk 발굴 및 개선활동
- 건강검진 실시 및 주기 관리
- 안전 문화 조성 및 사내규정 위반 Zero 달성

3. 세부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구분	세부 목표	배점		평가기준	평가주기	비고
		직접	간접			
교육 및 훈련 참여율	정기 안전보건 교육 이수	10	20	이수율 X 배점	분기	
	전사 비상사태 훈련 참석률	10	20	참여율 X 배점	년	보고서 증빙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참여	10	20	이수율 X 배점	년	
	팀 자체 교육 훈련 진행 (교육대상자, 팀원 90%이상 참여)	가점	가점	진행건수	년	1점/건, 보고서 증빙
잠재위험 Risk 발굴 및 개선활동	현장 자체 안전점검 진행	10	-	점검 미실시 (-1점/월)	월	보고서 증빙
	팀별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진행	30	-	이행율 X 배점	년	보고서 증빙
	팀별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진행	10	-	개선율 X 배점	월	보고서 증빙
건강검진 실시 및 주기 관리	법적 건강진단(일반, 특수검진) 대상자 수검	10	20	수검율 X 배점	년	
	법적 건강진단(일반, 특수검진) 대상자 주기 준수	10	20	준수율 X 배점	년	
안전문화 조성 및 사내규정 위반 ZERO 달성	사고발생 / 수칙 위반 발생	감점	감점	등급별 감점 반영	발생시	사고 및 수칙 위반
	공모전 포상 건수 (소속부서 또는 부서원)	가점	가점	사내 외 안전환경 포상건수 (5점/건)	발생시	
	해당 구역 소화기 점검 누락	감점	감점	점검 미실시 (-1점/월)	월	현장점검 결과
합계		100	100			

□ (4단계)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 (관리감독자 연간 대표이사 직접 표창) 생산·정비 등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연간 평가 및 평가 우수자에 대한 대표이사 직접 표창

24년 시무식 대표이사 직접 표창

- 대표이사 직접 우수자 표창을 통한 관리감독자 의식 수준 함양



[사례2] 코오롱인더스트리(주)경산공장 (업종: 면직물 직조업, 근로자 수: 243명)

❖ 다양한 방법과 창구를 활용하여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조치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안전보건 개선 제안(온라인), 안전공청회, 아차사고 사례 발굴, 전사원 설문조사, 작업단계 세분화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1. JSA 기법 활용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 1) 작업표준별 JSA 매칭
 - 작업표준 LIST-UP하여 표준별 JSA 실시
- 2) JSA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 작업절차서 순서에 따라 작업단계 구분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조치

부서명	공정명	작업명	평가 계획	평가 여부	비고
Alrolog	공통	원부자재 입고(약제, 물리품, 설계) 작업	3월	2월	
	가공공정	설치 준비 작업	3월	2월	
	가공공정	절취리 공정	3월	3월	
	가공공정	절취리 공정	3월	3월	
	가공공정	가공선 외인입 공정	4월	4월	
	가공공정	정원 약제 이동 및 Mixing 작업	4월	4월	
	가공공정	설치 장치 및 연료 작업	4월	4월	
	가공공정	설치 장치 및 연료 작업	4월	4월	

작업명	바코딩	평가자	신원준, 송민호, 채주경, 김성, 박민우, 김민아, 김기영, 김민서, 오영석, 노지영	평가 일자	2023.03.07								
작업장소	바코딩기	교육 강사 (관리감독자)	배주경, 박민서 (서명)	교육 일자	2023.03.24								
필요한 보호구/장비	■ 안전화 ■ 안전모 □ 방진마스크 □ 귀마개 □ 안전대 ■ 보안경 □ 보안면 □ 방독마스크(반면형) □ 방독마스크(전면형) □ 에어라인마스크 □ 화학용 보호복 ■ 화학용 보호장갑 □ 구명로프 □ 방열복 □ 내열장갑 □ 전기용 안전장갑 □ 절연모 □ 절연의 □ 절연화 □ 구명선 □ 송기마스크 □ 통신장비 □ 사다리 □ 비상산소공급기 □ Pocket용 Gas Detector □ 기타 보호구/장비 : 전동차, 호이스트, 원단연결용 핀												
연번	작업단계 (Steps)	유해위험요인 (Hazard)	현재 안전조치	개선 전			개선 대책 (Controls)			개선 후			개선 담당자
				빈도	강도	위험도 (R)				빈도	강도	위험도 (R)	
1	준비작업	전동차 충전책 파손으로 인한 감전위험	충전 전·후 책 이상유무 확인	1	2	2							
		전동차 발판 오르내릴때 발을 헛디더 떨어져 다칠 위험	발판 확인 사용 미끄럼 방지패드 이상유무 확인	1	2	2							
		전동차 발판 내리다 상해를 입을 위험	발판 확인 사용	1	2	2							
		바코딩기대 가동/정지시 계단 오르내릴시 미끄러져 다칠 위험	안전화착용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1	2	2							
		잉크 노즐 청소시 화학물질에 접촉할 위험	보안경 착용 화학용 보호장갑 착용	1	3	3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2. 정기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Check List 활용

1) 6가지 대분류 위험 확인

- 대분류: ①기계적(설비)요인, ②전기적요인, ③화학(물질)적요인, ④생물학적요인, ⑤작업특성요인, ⑥작업환경요인

유해위험요인 CHECK SHEET							
공정명	출고	작업명	원단거치	설비	전동차	물질	
NO	대분류		소분류 (해당 사항에 "V"표)				
1	기계적(설비) 요인		<input type="checkbox"/> 끼임 위험 (감김, 끼임)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위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input type="checkbox"/>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컷디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계(설비)의 충돌, 전도, 무너짐, 넘어짐, 걸림 위험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위험 (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input type="checkbox"/> 감전 (안전전압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아크	<input type="checkbox"/>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input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액체/미스트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증기 <input type="checkbox"/> 고체/분진 <input type="checkbox"/> 화재/폭발 위험	<input type="checkbox"/> 에어로졸/흄 <input type="checkbox"/> 반응성 물질 <input type="checkbox"/> 복사열/과압		
4	생물학적 요인		<input type="checkbox"/>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input type="checkbox"/> 동물	<input type="checkbox"/> 유전자 변형물질 <input type="checkbox"/> 식물	<input type="checkbox"/> 알러지 및 미생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5	작업특성 요인		<input type="checkbox"/> 소음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실수 (휴먼에러) <input type="checkbox"/> 중량을 취급작업 <input type="checkbox"/> 작업(조작) 도구	<input type="checkbox"/> 초음파, 초저주파음 <input type="checkbox"/> 저압 또는 고압 상태 <input type="checkbox"/> 반복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진동 <input type="checkbox"/> 질식위험/산소결핍 <input type="checkbox"/> 불안정한 작업자세		
6	작업환경 요인		<input type="checkbox"/> 기후/고온/한랭 <input type="checkbox"/> 주변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작업시간	<input type="checkbox"/> 공간 및 이동통로 <input type="checkbox"/> 조직 안전문화		

2) 대분류/소분류별 상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참여자		(위험성평가 참여자 명단 참고)																
업체명	공정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등급			개선대책	책임 부서	개선 예정일	개선후 위험등급		개선완료 확인		관련 사진 No	
			대분류	소분류	내용		강도	빈도	위험등급				강도	빈도	위험등급	확인일		확인자
AIRBAG	가공	권출	기계적(설비) 요인	끼임 위험 (감김, 끼임)	가공2호기 권출과정 시 근로자 전압으로 끼임, 탈출 위험	1. 가드 설치	4	1	4등급 낮음									
AIRBAG	가공	정환/열고형	작업환경 요인	조작 안전 문화	가공2호기 롤러 방척의 임의 해제 가능하여 열개 유단 탈거 후 전압 위험		4	2	3등급 보통	1. 방포를 제거 시 설비 청자가 우선되도록 안전 롤러고 제갈 2. 불가 시, 자물쇠 잠금조치	생산팀	개선완료	4	1	4등급 낮음	7월 17일	송성훈	1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3. 안전보건 개선제안을 통한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 우수제안자 제안건수 공개하여 제안 독려
- 안전보건 개선제안 인센티브 부여

금일	당월	누적(년) 2023
40	984	30,941

순위	이름	건수	점수
1	김민	0	317.0
2	김민	0	284.0
3	김민	0	225.0
4	김민	0	223.0
5	김민	0	219.0
6	김민	0	216.0

4.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아차사고 사례 반영

매월 아차사고 발굴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반영

[별첨#1] 아차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제목	크림 #2호기, 작업자, 집중자 이용중 거동중 충돌하여 다발병한 사고		
사고 위치	출연도 <input type="checkbox"/> AIRBAG <input type="checkbox"/> AKILEN <input type="checkbox"/> 사무도 <input type="checkbox"/> MBR <input type="checkbox"/> 공동	위치	관동#2호기
작성/발급자	소속	에어백 생산팀	조사/작성 일자
	성명		2022년 4월 19일
사고 당시 상황	사건	사태 구분	정형 <input type="checkbox"/> 정제위험 <input type="checkbox"/> 충격
	성명		사고 일시
사고 당시 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귀동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미 <input type="checkbox"/> 관개 <input type="checkbox"/> 상용	
현재 위험요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동 <input type="checkbox"/> 전도 <input type="checkbox"/> 전차 <input type="checkbox"/> 전발 <input type="checkbox"/> 전식 <input type="checkbox"/> 전독 <input type="checkbox"/> 전사 <input type="checkbox"/> 전충 <input type="checkbox"/> 전상 <input type="checkbox"/> 전굴착 <input type="checkbox"/> 전산 <input type="checkbox"/> 전충		
위험 내용	전동차 및 작업자 이용중 거동중 충돌하여 다발 병 발생 있음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등급		
	대분류	소분류	내용		강도	빈도	위험등급
원단거치용 (올비)용 인	기계적	부딪힘 위험	전동차 이용시 충돌 전도위험	전동차 표준작업 지침서 개정 및 교육	3	1	5등급 아주낮음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노력]

3. 전부서 정기 안전공청회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1) 정기(반기 1회) 각 부서별 안전공청회 실시

- 참석 대상: 공장장, 부서 내 모든 관리감독자(팀장, Unit Leader, Part장, 반장, 조장) 및 작업자(사원)
- 교대조별 안전공청회 실시



2)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No.	공정명	작업명	위험요소	문제점 접수일도	부연설명	현장 사진	조치방법	조치여부	조치후 사진
1	코팅#1	연와인딩 공정	떨림	안전 공청회	코팅#1 호이스트 센터가 맞지 않아 사람이 직접 밀어서 맞추고 있음 : 원단폭이 넓은 경우 변부가 상당히 좁아 낙하 및 안전 사고 위험 있음		호이스트 이동 설치	호이스트 이동 설치 완료	
2	공통	생지 이동	추락	안전 공청회	생지 Rack 기준으로 2단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안전 벨트를 풀고 고개를 내밀고 확인해야 함 (지게차 마스트 부에 가려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함)		1. 전방 카메라 설치	1. 지게차 Ram 사이즈 축소 및 이동 설치 완료 (07/06)	



공정명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감독자	사진
가공	생지 장착 (가공기로 이동된 생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장착)	○ 생지(원단)을 지게차로 운반시 주변 구조물 또는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①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 인체감지 시스템, 속도제한 장치, 안전벨트 인터락, 지게차 작업반경 표시장치 ② 지게차 실내 운행속도 지정 운영(5 km/h 이하) ③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④ 보행자 전용통로 도색	송○○파트장, 채○○반장	
		○ 생지 Rack에서 지게차로 생지 운반시 육안 식별 어려워 지게차와 구조물이 충돌할 위험 ① 전방 카메라 설치 ② 지게차 Ram 사이즈 축소 및 이동 설치(23년 7월 완료)	송○○파트장, 채○○반장	
		○ 호이스트를 사용 시 원단(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① 호이스트 사용 시 안전모 착용 ② 축해지장치 확인 후 작업	송○○파트장, 채○○반장	
		○ 작업자 이동 시 작동중인 가이드물에 발이 끼일 위험 → 가이드물 부위 끼임방지 커버 설치(22년 5월 완료)	노○○반장, 심○○반장	

- (안전보건조치 결정) 작업자, 관리감독자의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계획 및 조치 실시 여부 관리

[작업자, 관리감독자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 결정]

- 1) 작업자, 관리감독자 의견 수렴하여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시
- 2)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방안 업데이트
 - 현재 안전조치 외 추가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안에 개선 계획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개선 조치 완료시 완료 여부 기재

공정명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감독자
가공	생지 장착 (가공기로 이동된 생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장착)	○ 생지(원단)을 지게차로 운반시 주변 구조물 또는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①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 인체감지 시스템, 속도제한 장치, 안전벨트 인터락, 지게차 작업반경 표시장치 ② 지게차 실내 운행속도 지정 운영(5 km/h 이하) ③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④ 보행자 전용통로 도색	송○○파트장, 채○○반장
		○ 생지 Rack에서 지게차로 생지 운반시 육안 식별 어려워 지게차와 구조물이 충돌할 위험 ① 전방 카메라 설치 ② 지게차 Ram 사이즈 축소 및 이동 설치(23년 7월 완료)	송○○파트장, 채○○반장
		○ 호이스트를 사용 시 원단(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① 호이스트 사용 시 안전모 착용 ② 흑해지장치 확인 후 작업	송○○파트장, 채○○반장
		○ 작업자 이동 시 작동중인 가이드롤에 발이 끼일 위험 → 가이드롤 부위 끼임방지 커버 설치(22년 5월 완료)	노○○반장, 심○○반장
코팅	가공지 장착 (가공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장착)	○ 호이스트를 사용 시 원단(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① 호이스트 사용 시 안전모 착용 ② 흑해지장치 확인 후 작업	송○○파트장, 채○○반장
		○ 코팅#1호기 호이스트 센터가 맞지 않아 사람이 직접 밀다가 원단과 충돌하거나 원단이 낙하할 위험 → 호이스트 이동 설치(23년 9월 완료)	송○○파트장
		○ 가공지 장착작업 시 회전체 노출부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 → 회전체 노출부에 출입금지 시건장치 설치(22년 5월 완료)	노○○반장, 심○○반장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역할 부여) 공정별 세부 작업에 맞춘 업무분장 실시(해당 부서 총괄 관리자가 아닌, 작업별 관리자에 임무 부여)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도 역할과 책임 부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 일선 관리감독자 업무분장]

1. 관리감독자 업무분장표에 유해위험요인 관리 명시

소속		직무			
사무드생산팀		파트장, 반장			
No.	무엇을	왜	언제		
			매일	매주	매월
1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 업무	√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안전사고예방	√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안전사고예방, ISO 규정	발생시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안전사고예방	√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 협조	안전사고예방	√		
6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개선조치)	안전사고예방	년간계획에 맞추어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해, 위험 방지 업무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관리 주기에 맞추어		
8	PU원액 충입, DMF 출고시 입회 확인	누출사고 및 안전사고예방	충입시		
9	Scrubber 상태 점검	안전사고예방, ISO 규정	관리 주기에 맞추어		
10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	안전사고예방	√		
11	PU 잔액(Drum) 수량 점검/폐기 처리	폐기를 법적 관리기준 준수	√		
12	환경/안전 단톡방 지적사항 확인/조처지시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		
13	화관법 설치검사/정기검사 대응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발생시		
14	환경안전분야 사고 보고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발생시		
15	환경안전통합관리법(22년부터) 시행에 따른 준비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발생시		
16	ISO 14001 정기 교육 관리	환경/안전 무재해 사업장 구축	년간계획에 맞추어		
17	PU외각지 창고 출입대장/관리대장확인	자체점검 대장 작성(법적사항)	출입시		

2. 유해위험요인별 관리감독자 지정

팀장, Unit Leader 직급이 아닌 파트장, 반장 직급에서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공정명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감독자
부직포	원면/부직포 (D/R Gap 조정 작업)	○ 1~8호기 D/R Gap조정 작업과정에서 롤사이 손 말림/끼임 협착 위험 ① 비상정지로프 설치 ② 정비 및 소재작업시 LOTO 실시	강○○반장, 박○○파트장
	원면/부직포 (부직포 웹접힘 확인 작업)	○ 부직포 편칭 기대 소음(23년 하반기 소음: 86.7 ~ 92.5 dB) ① 귀마개 착용(작업자별 귀마개 밀착도 검사 실시) ② 소음계시판(소음수준고지, 유해성인지, 보호구착용방법) 운영	강○○반장, 박○○파트장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역할과 책임]

1.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 실시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 시 관리감독자 역할 평가

- 구성원 역할분담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협력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특정
1. 안전보건관리체제		30	0
1.1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여부	10	0
1.2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여부	20	0
2. 안전보건교육		30	0
2.1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10	0
2.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내용 적절성 여부	20	0
3. 안전보건점검		30	0
3.1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10	0
3.2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여부	20	0
4. 안전보건기록		30	0
4.1 안전보건기록	안전보건기록 관리 여부	10	0
4.2 안전보건기록	안전보건기록 내용 적절성 여부	20	0
5. 안전보건비용		30	0
5.1 안전보건비용	안전보건비용 예산 수립 여부	10	0
5.2 안전보건비용	안전보건비용 집행 여부	20	0
합계		150	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5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점)

2.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Check List에 반영

사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Check List에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역할과 책임 부여 내용 반영

- 도급업체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참여/개선여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여부 등 확인

점검 항목	점검 세부 항목	관련 서류	점검 내용 (O/X/▲)
3.2 안전보건준수책임지			
1. 도급업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여부 관련 사항	사업장 및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평가	사업장/작업장/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간 상호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수행자 명단	
	위험성평가 시 사내의 사고사례를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2. 도급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상위) 도급업체에 실시 여부 표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개선사항과 자료	
6.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합당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규정에 따른 최소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일과 안전보건	수급업체 평가내역 자료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도급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는 관리감독자 및 종사
자를 포함하는지

도급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역할 수행 확인) 공장장(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중 테마를 지정하여 매월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 개선 실시

[TOP 안전점검 Day 운영]

- 1)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작성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실시
- 2) 관리감독자 임무 수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관리, 관리방안/개선 사진 추가하여 관리

공정명	작업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관리감독자	사진
가공	생지 장착 (가공기로 이동된 생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장착)	○ 생지(원단)을 지게차로 운반시 주변 구조물 또는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①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 인체감지 시스템, 속도제한 장치, 안전벨트 인터락, 지게차 작업반경 표시장치 ② 지게차 실내 운행속도 지정 운영(5 km/h 이하) ③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④ 보행자 전용통로 도색	송○○파트장, 채○○반장	
		○ 생지 Rack에서 지게차로 생지 운반시 육안 식별 어려워 지게차와 구조물이 충돌할 위험 ① 전방 카메라 설치 ② 지게차 Ram 사이즈 축소 및 이동 설치(23년 7월 완료)	송○○파트장, 채○○반장	
		○ 호이스트를 사용 시 원단(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① 호이스트 사용 시 안전모 착용 ② 록해지장치 확인 후 작업	송○○파트장, 채○○반장	
		○ 작업자 이동 시 작동중인 가이드롤에 발이 끼일 위험 → 가이드를 부위 끼임방지 커버 설치(22년 5월 완료)	노○○반장, 심○○반장	
코팅	가공지 장착 (가공지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거치대에 장착)	○ 호이스트를 사용 시 원단(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 ① 호이스트 사용 시 안전모 착용 ② 록해지장치 확인 후 작업	송○○파트장, 채○○반장	
		○ 코팅#1호기 호이스트 센터가 맞지 않아 사람이 직접 밀다가 원단과 충돌하거나 원단이 낙하할 위험 → 호이스트 이동 설치(23년 9월 완료)	송○○파트장	
		○ 가공지 장착작업 시 회전체 노출부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 → 회전체 노출부에 출입금지 시간장치 설치(22년 5월 완료)	노○○반장, 심○○반장	

- 3) TOP 안전점검 실시
 - 매월 TOP 안전점검 Day를 운영하여 공장장이 팀장과 불시 점검 실시
 - 월별 테마를 지정하여 점검 실시
(테마 예시: 볼트/너트 체결 및 풀림방지, 호이스트/크레인 줄걸이 안전, 게이지류 운전 범위 표시 등)



[TOP 안전점검 Day 운영]

4) 지적사항 개선조치

- 유해위험요인 관리 미흡한 부분 지적사항 개선조치 실시
- 개선 결과 공장장 결재

NO	테마	공정	점검결과	조치내용	계획	실적
					일정	완료시기
1	볼트너트 체결 및 풀림방지	에어백 #1라인	코팅1호기 CW배관 금메김표시 불량	코팅1호기 CW배관 금메김 재실시	~23년	23년 5월
2		에어백 #2라인	가공2호기 금메김 표시 불량	가공2호기 금메김 재실시	~23년	23년 5월
3		CTD	3층 릴리프 밸브 금메김 표시 불량	3층 릴리프 밸브 금메김 재실시	~23년	23년 5월
4		조역실	CORE MAKE UP TANK(T-020) 금메김 표시 불량	볼트/후렌지/너트 일직선 표시	~23년	23년 5월
5		FE공정 성능평가설비	성능평가기 후단부 금메김 표시 불량	성능평가기 후단부 금메김 표시	~23년	23년 5월
6		H2공정 모듈세척설비	OP#110 모듈세척기 금메김 표시 불량	OP#110 모듈세척기 금메김 표시	~23년	23년 5월
7	배관 말단부 마감	가공 #3호기	샤워기 볼밸브 Cap 설치 필요	샤워기 볼밸브 Cap 설치 완료	~23년	23년 6월
8		MP-601	유제 유후설비 말단부 마감처리 필요	유제 유후설비 말단부 마감처리 완료	~23년	23년 6월
9		조역실	T-20 뒷편 마감조치 미흡	T-20 뒷편 마감조치 완료	~23년	23년 6월

NO	1	NO	2	NO	3
개선 전		개선 전		개선 전	
	▷ 코팅1호기 CW배관 금메김표시 불량		▷ 가공2호기 금메김 표시 불량		▷ 3층 릴리프 밸브 금메김 표시 불량
개선 후		개선 후		개선 후	
	▷ 코팅1호기 CW배관 금메김 재실시		▷ 가공2호기 금메김 재실시		▷ 3층 릴리프 밸브 금메김 재실시

- (역할 수행 평가) 공장장 주관 매월 부서별 ESH 활동 실적 발표를 통해 부서별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수평전개 실시

[Safety Day 공장안전회의 운영]

공장장 주관 부서별 ESH 활동 실적 공유(월 1회)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고위험작업 발굴 및 개선현황에 대해 각 부서 팀장(관리감독자)이 추진 현황 발표

3. 현장 개선사항(주요 내용)

No.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 후 사진
		내용	사진		
1	계중별 점검	헤어백 CNS 재단기#32 Laser 센동기 Hose 보호 Cover가 없어 걸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있음.		보호 Cover 및 발판대 설치	
2	계중별 점검	사우드 PU 조역 공정 지게차 배터리 충전 커넥터 파손으로 인한 위험 있음.		신규 커넥터 교체	
3	현장 Patrol	FCF 모듈 디팬싱 미제거 양자 Bolt로 이동중 넘어짐 위험 있음.		양자 Bolt 제거	
4	기타 점검	사우드 열매실 상부 형광등 고장 불명으로 열광등 주먹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있음.		신규 형광등 교체 및 고장	

3. 현장 개선사항(주요 내용)



- <하단 Roll 직경 : 60mm>
1. Drum과 Pump Packing 간격이 좁아, 실리온 소진 완료 후 Drum 분리가 어려움 - 간헐적게 부양 공정
 2. Drum과 Pump Packing 간격이 좁아, 교체시 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 직을 중 추가 작업이 어려움



- <하단 Roll 직경 : 40mm>
1. Drum과 Pump Packing 간격이 개선으로, Drum 분리가 비교적 쉬움
 2. Drum과 Pump Packing 간격이 좁아, 교체시 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 직을 중 추가 작업이 비교적 용이함

- 개선결과 및 실시을 파악하여 신속한 개선 독려
- 점검 및 개선결과 중 우수사례 공유하여 수평전개 실시

4. 주요 안전 위험 요소 발굴/개선 사항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비고
	공정 / 내용	위험요소		
현장 채취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 PU공정 √ 내용 : 연구소 TEST용 첨가제가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된 용기로 입고 (화학물질 사전신고는 완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노출시 정보 확인 및 긴급조치 어려움 √ 과태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입고/사용 규칙 정립 - 자재담당 : 연구/TEST용 자재 입고시 경고표지 부착여부 확인, 미부착시 입고 금지 - 공정원 : 경고표지 미부착 자재 사용 금지 	
 <p>[PU공정의 연구소 TEST용 첨가제 모습 -> 연구소 홍보/확인후 현장 배치조치]</p>				

- (역할 수행 독려)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실시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자율적 전원 참여 독려를 위하여 안전보건 우수제안자 및 활동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인센티브 부여

[자율적 전원참여 독려 활동]

1. 관리감독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발굴,관리 및 TBM 활동 교육 실시



2. 정기 환경안전 시상 실시

- 매월 환경안전팀장 시상 3명, 우수사원 현장 시상 5명



3. 부서 자체 참여 독려 활동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굴 우수자 시상(월 1명/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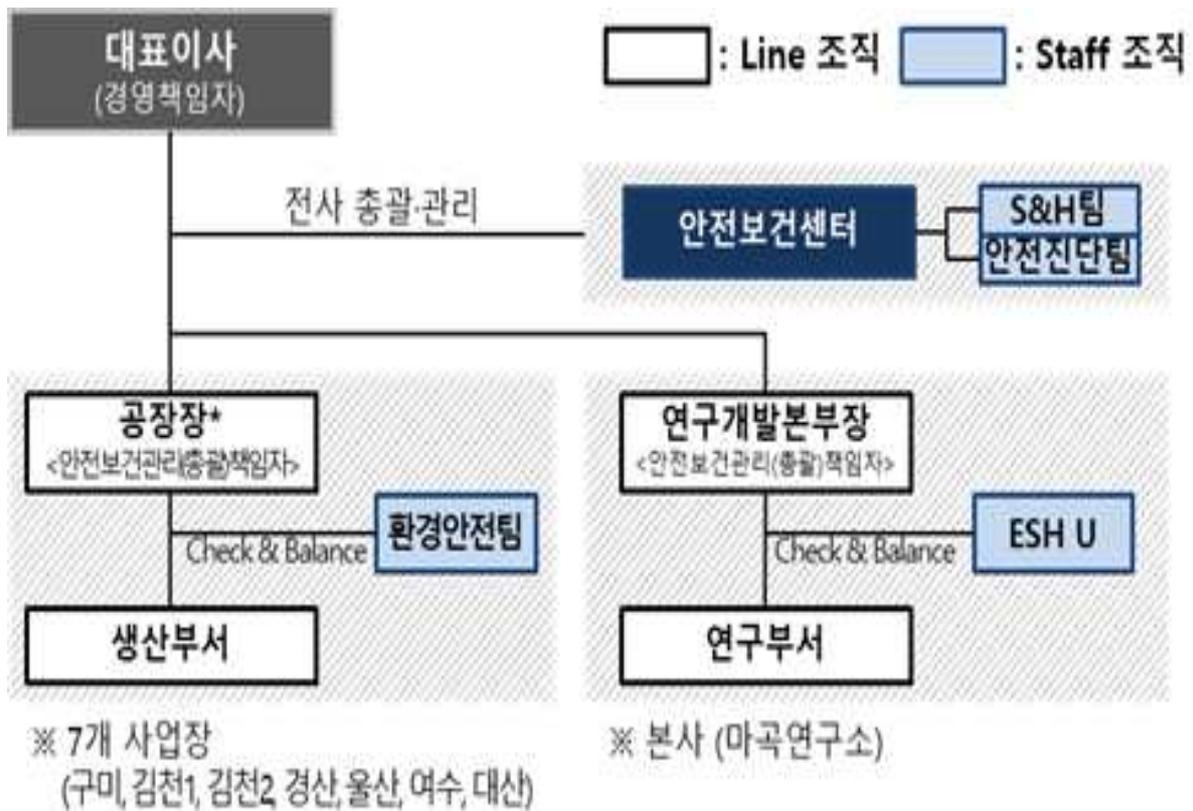
□ 기업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 (안전보건 조직 및 업무 수행) Line 조직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 안전보건센터 및 사업장 환경안전팀은 Staff 역할을 수행. 본사 안전보건 조직에서 각 사업장 공장장에게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공장장이 Safety Day 공장안전회의 또는 팀장 주간회의 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 지시

[관리감독자 중심 Line 조직 안전보건 관리]

전사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Line 조직 관리감독자가 주체적으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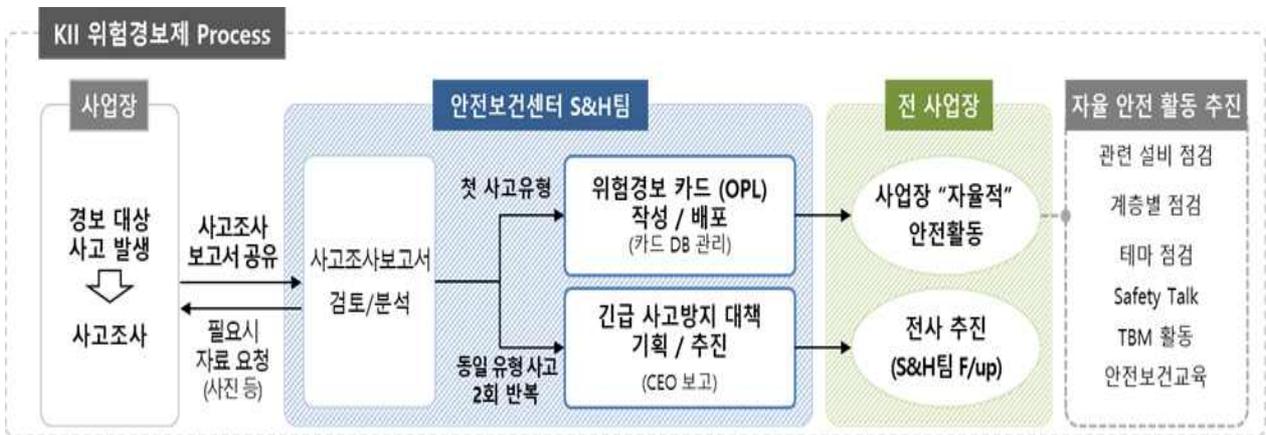
- 각 사업장 공장장, 관리감독자(팀장, Unit Leader, Part장, 반장, 조장), 사원으로 구성된 Line 조직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 본사 안전보건센터(S&H팀, 안전진단팀) 및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은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Staff의 역할을 수행하여 Line 안전보건 관리 활동 확인 점검 및 가이드 실시



- (사업장 자율 안전 활동 유도)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경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사회적 이슈 사고, 계열사 사고 등) 발생 시 본사 안전보건센터에서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KII 위험경보 카드를 배포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사고사례 교육 및 수평전개 개선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KII 위험경보제 운영

[KII 위험경보제 운영]

사고사례 전사 공유를 통한 관리감독자 자율 안전 활동 유도



- 경보 대상: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경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사회적 이슈 사고, 계열사 사고 등)
- 위험경보 카드 작성 및 배포: 본사 안전보건센터 S&H팀
- 수신 대상: 전 사업장 공장장, 관리감독자, 환경안전부서

Safety Talk Card – 5월 지게차 사망사고 급증 (전국) ST Card No. STC-E-A-012
SAC Card No. SAC-2023-003

“ 지게차 관련 법규 ·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지게차 사망사고 급증 !! (전국) “5월 누계 9명 사망”			
1월	9일	도매사업장	광주시 조월읍 사망 1명 지게차 모크 탑승하여 2층 적재칸소 작업 중 떨어짐
	9일	제조업	광주시 광산구 사망 1명 운행 중인 지게차 백레스트와 자재 투입구 사이에 끼임
2월	28일	제조업	경남 양산시 사망 1명 지게차 운전 중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깔림
3월	27일	유통센터	경기 이천시 사망 1명 지게차 운전 중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깔림
4월	4일	제조업	충남 천안시 사망 1명 피동차 운전자 대기하던 중 지게차에 부딪힘
5월 (5.18 기준) 급증	12일	제조업	경남 김해시 사망 1명 경사로에서 지게차를 추진 중 넘어지며 깔림
	14일	제조업	경북 영천시 사망 1명 적재물 확인하던 중 정차한 지게차 움직임 끼임
	16일	도매사업장	경남 합천군 사망 1명 곡선 주행 중 지게차 넘어지며 깔림
16일	제조업	경기 양주시 사망 1명 직업장 정리중 지게차 적재 중량을 떨어져 깔림	

지게차의 위험성

깔림

급선회 등으로 전도되는 지게차
부딪힘, 끼임

맞음

과다적재, 빈하중, 지면오일 등으로 회를 낙하
떨어짐

운전자 시야불량, 운전 미숙, 과속

사고 예방 대책 ※ 각 공장 점검교육 강화 권장

- 안전띠/안전모 착용
- 안전통로 확보/구분
- 작업계획서 작성
- 제한속도 준수
- 적재하중 초과 금지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 금지

• 경사면, 요철구간 과속/급회전 금지

• 반사경 설치

• 시야 확보 (필요시 유도자)

• 적재하중 초과 금지

• 편하중 발생 방지

• 운전자 시야불량, 운전 미숙, 과속

• 포크 상승 상태에서 고소작업

대화 주제

- 지게차의 위험성 및 사고 예방 대책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간담회를 통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와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소통

[CEO 전사 ESH 현장경영]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보건 현장 경영 실천

- 1) 안전보건관리 운영 현황 CEO 보고
 - 안전보건 주요 이슈 사항, 중점 관리 테마 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



- 2)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비상대응훈련/위험예지훈련 등 확인



- 3)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대상 ESH 간담회 실시
 - 역할 수행 독려 및 건의사항 수렴,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소통 실시



-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CEO)가 전사 환경안전위원회, 전사 환경안전 협의회를 통해 각 사업장 공장장 및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

[전사 환경안전위원회/협의회 운영]

1) 전사 환경안전위원회 실시

- 연 1회(년초) 실시하는 전사 환경안전위원회에 경영책임자(CEO) 및 각 사업장 공장장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확인



2) 전사 환경안전협의회 주재

- 매월 1회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환경안전협의회 중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에 실시하는 환경안전협의회에서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하반기 향후 계획 확인



- **(역할 수행 평가)** 사업장별 안전관리 성과를 측정하고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전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수행의 결과를 평가해 경영책임자(CEO) 명의로 시상하는 우수 안전사업장 포상 제도 운영

[우수 안전 사업장 포상 제도]

- 1)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평가 항목: 안전문화, 사고예방, 안전리더십, 안전수준
 -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우수 안전 사업장을 지정하여 포상



- 2) 당해 연도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해 초 시상 실시
 - CEO 명의 시상패 및 시상금 지급



VI. 주요 안전관리 활용 OPS(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1 지게차(최근 5년 61명 死)



▶ 지게차(Fork Lift)란?

포크(fork)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와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한 하역운반기계

▶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자재가 전도되어 깔림
 - ② 자재 적재 후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 ③ 급선회로 인해 지게차가 전도되어 깔림
- <주로 깔림·뒤집힘(26.1%), 부딪힘(24.6%), 끼임(23.0%)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
- ②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운전자 착용 상태 관리
- ③ 무자격자 운전 금지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지휘 [부장·과장·팀장·반장 등 단위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지정]		
	③ 무자격자 운전금지		
	④ 미사용시 전담관리자 시동 키 관리		
전용 통로 확보 여부	⑤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운행 [지게차 운행통로에 근로자 출입 통제]		
	⑥ 사각지대 등 반사경 설치 상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⑦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운전자 착용 상태		
	⑧ 전조등·후미등 설치 및 점등 상태		
	⑨ 헤드가드(Head guard) 및 백레스트(Backrest) 설치 상태		
	⑩ 후방확인조치(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설치 상태 [지게차 안전장치 보조금 지원 가능(50인 미만)]		
운전목적외 사용금지	⑪ 하역운반 외 고소작업 등 사용금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화물적재 및 운행의 안전성	⑫ 운전자의 시야 확보 [화물 과다적재, 포크 과다 상승 운행 금지]		
	⑬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근로자 준수사항	⑭ 사업장 내 제한속도 준수		
	⑮ 포크 등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 금지 [파렛트 등에 탑승금지]		

2 크레인(최근 5년 37명 死)



▶크레인(Crane)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중 철판에 맞음
- ② 기계장치 수리 후 크레인으로 설치 중 끼임
- ③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섬유로프 끊어지며 깔림
<주로 끼임(43.2%), 물체에 맞음(21.6%)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와이어로프, 체인, 줄걸이 용구의 마모·변형·부식 및 손상 확인
- ② 정비·점검 등 작업 시 기계전원 차단 및 감시인 배치
- ③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지휘 [부장·과장·팀장·반장 등 단위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지정]		
	③ 안전인증품 사용(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안점검사 대상(정격하중 2톤 이상) 수검여부 확인 [사업장 설치 끝난 날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그 이후 매 2년마다]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⑤ 크레인 방호장치의 안전성 확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혹 해지장치 등]		
	⑥ 작업 전 와이어로프·섬유로프·인양체인 등의 줄걸이 용구 마모·변형·부식 및 손상 확인		
크레인 조작	⑦ 크레인 조작용 펜던트 스위치의 손상·파손 또는 정상 작동 확인 [펜던트 스위치 유선 → 무선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기능(50인 미만)]		
	⑧ 크레인 작업 경로 충돌·낙하 등 위험요소 사전 확인		
	⑨ 중량물 취급 시 주변 근로자 출입 통제		
	⑩ 신호수 배치 및 일정한 신호 방법 규정 준수		
	⑪ 줄걸이 작업 적정성 확인 [줄 걸이 여부, 접촉부 보호대 설치 등]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⑫ 감시인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위험방지 조치 실시		
	⑬ 크레인 동력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⑭ 고소 작업 시 떨어짐 방지 조치 실시 [로프·혹·피벗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근로자 준수사항	⑮ 크레인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크레인 작업 시 주변 근로자 위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 등]		

3 컨베이어(최근 5년 27명 死)



▶컨베이어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운반하는 기계장치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가동중인 컨베이어 이물질 제거 중 벨트에 끼임
- ②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불시 기동되면서 끼임
- ③ 컨베이어 상부에서 점검 중 불시 기동되어 떨어짐
<주로 끼임(85.2%), 떨어짐(11.1%)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끼임 위험 부위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 설치
- ② 비상정지장치를 작업영역 내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 ③ 청소·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13.3.1. 이후 제조·출고된 경우 해당]		
	② 안점검사 수검 여부 확인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매 2년 마다]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③ 동력전달 부분, 벨트, 롤러, 풀리 등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④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⑤ 화물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방지 조치		
	⑥ 운반물 이탈(가이드 난간 등) 및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⑦ 컨베이어 위 건널다리 및 주변 안전난간 설치		
	⑧ 동력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⑨ 조작자 시야에서 벗어난 구역이 있는 경우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설치		
	⑩ 작업범위 내 위험구역 표시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 금지		
근로자 준수사항	⑪ 고소 작업 시 떨어짐 방지 조치 실시		
	⑫ 청소·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 후 작업 실시		
	⑬ 벨트 등 컨베이어 상부에서 작업 금지		

4 지붕·대들보(최근 5년 22명 死)



▶지붕 채광창(Sun-Light)이란?

공장 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조 조명용으로 설치 사용하는 지붕 구조물<주로 강화플라스틱(FRP)* 소재>

* 장기간 사용 시 노후로 인한 파손 위험 증가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채광창 파손으로 떨어짐
- ② 태양광 설비 설치 중 채광창 파손으로 떨어짐
- ③ 슬레이트 교체공사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떨어짐
<주로 떨어짐 (95.5%), 화학물질 누출·접촉(4.6%)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및 안전성 확인
 - ② 지붕 위 작업시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Sun-Light) 등에 견고한 덮개 설치
 - ③ 경사지붕 최상단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걸기
- ※ 작업발판·덮개 설치→(곤란시) 지붕하부 안전방망→(곤란시) 안전대·부착설비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필요시) 중량물의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지휘 [부장·과장·팀장·반장 등 단위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지정]		
사전 확인	③ 작업 당일 일기예보 또는 기상 상태 확인 [눈, 비, 강풍 등 예보 시 공사 중지 및 일정 조정]		
	④ 지붕의 형태, 구조 등 사전 파악 [이동통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계획 수립]		
	⑤ 슬레이트, 채광창(Sun-Light) 노후 상태 확인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호조치 계획 수립]		
	⑥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및 안전성 확인 [고정식사다리, 워킹타워, 고소작업대(차) 등]		
지붕(태양광) 설치·보수·교체 작업 시	⑦ 지붕 위 자재 등의 집중 또는 과적 여부 확인		
	⑧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지정된 안전통로 이용 여부 확인		
	⑨ 지붕 위 작업 시 폭 30cm 이상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⑩ 채광창(Sun-Light)에 견고한 덮개 설치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50인 미만)]		
	⑪ 지붕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⑫ 경사지붕 최상단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걸기		
	⑬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⑭ 지붕 위 또는 주변 가공전선 접촉위험 여부 확인		
근로자 준수사항	⑮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후 작업 실시		

5 이동식 사다리(최근 5년 19명 死)



▶이동식사다리란?

높은 곳에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배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
- ② 비산방지용 칸막이 설치 중 1.8m 사다리에서 추락
- ③ 선박 보온재 설치 중 1.4m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
<주로 떨어짐(94.7%), 넘어짐(5.3%)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원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②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③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맞는 기성품 사다리 사용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나, 가급적 S마크 제품 사용 권고]		
사전 확인	② 작업 전 사다리 주요부분 마모·손상·부식 확인		
	③ 사다리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④ 사다리 작업 주위 전선, 전기설비 유무 및 상태 확인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⑤ 사다리는 통로로 이용, 원칙적으로 작업에 사용 금지		
	⑥ 최대길이 3.5m이하 A형 사다리에 한해 경작업, 고소 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사용 가능		
	⑦ 1.2m 이상에서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⑧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근로자 준수사항	⑨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⑩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하여 작업		

6 화물운반트럭(최근 5년 18명 死)



▶화물운반트럭?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오로지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운전자가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 ② 화물 운반 중 화물기사가 쓰러지는 화물에 깔림
- ③ 화물차량 수리 중 차량이 밀리면서 앞 차량 사이에 끼임
<주로 떨어짐(50.0%), 부딪힘(33.3%), 끼임(16.7%)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화물 과다 적재(허용하중 초과) 및 편하중 적재 금지
- ② 상·하차 작업 및 덮개 설치 시 넘어짐, 떨어짐 등 위험요인 확인 실시
- ③ 차량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등 설치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 준수 [중량물의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② 제동상태 및 주차브레이크, 조향장치, 각종 계기장치 등 작동상태		
	③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안전조치 상태		
	④ 전조등 조도, 반사각 및 차량 등화장치 관리 상태		
상·하차 작업의 안전성	⑤ 화물 상·하차 시 차량 이동 금지		
	⑥ 화물 과다 적재(허용하중 초과) 및 편하중 적재 금지		
	⑦ 화물고정용 로프(고무, 섬유벨트 등) 파손여부 점검		
	⑧ 화물 상·하차 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결속상태 확인		
	⑨ 상·하차 작업 및 덮개 설치 시 추락 위험요인 확인		
	⑩ 화물 상·하차 시 위험장소 근로자 접근 금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⑪ 사업장 내 제한속도 설정 및 준수		
	⑫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 설치 상태 확인		
	⑬ 차량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등 설치		
근로자 준수사항	⑭ 운전자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상태		
	⑮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화물과다 적재, 전면 유리 상태 및 후사경 설치 상태 등]		
	⑯ 운전 또는 작업 시 휴대폰 사용, 흡연 및 음주 금지		

7 혼합기(최근 5년 17명 死)



▶ 혼합기(Mixer)란?

액체, 고체 및 고점도 물질 등 각종 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의 균질성을 도모하는 기계

▶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혼합기에서 재료 배합 중 끼임
- ② 혼합기 내부 이물질 제거작업 중 가동된 믹서기에 끼임
- ③ 혼합기에서 재료 배합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 발생
<주로 끼임(58.8%), 폭발·파열(17.7%), 화재(11.8%)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덮개 연동장치 설치 및 작동확인
- ② 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 ③ 운전정지 시 “조작금지” 표지 게시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기계 사용 [적용제와 ①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씻어주는 용기 회전형 ②기류교반형 ③용량 200리터 미만 또는 구동모터 용량 1.0kW이하 ④식품용]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이 예상되는 곳 표지판 설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③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 [원료 투입구 덮개, 동력전달부, 속도조절부 등]		
	④ 방호장치 임의 해체금지(연동장치 등)		
	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및 정상작동) 설치		
	⑥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어반 전기기계·기구는 물기(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⑦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혼합기 외함접지 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		
	⑧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동력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⑨ 오조작 방지를 위한 조작반 및 분전함에 설비명, 차단기명 기입		
근로자 준수사항	⑩ 비상시 연락조치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⑪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원료투입·청소 등의 작업의 편익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 금지]		
	⑫ 혼합기 설비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⑬ 작업모 등의 착용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		

8 굴착기(최근 5년 12명 死)



▶ 굴착기(excavator)?

토사의 굴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파이프 등으로 작동되며 별도의 장치 부착을 통해 파쇄·절단작업 등이 가능한 기계
* 건설기계 관리법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굴착기 버킷에서 모터교체 작업 중 체결 핀이 분리되면서 추락
- ② 작업 장소에 굴착기 붐대가 회전하다 타격하여 추락
- ③ 공장 내 이동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주로 떨어짐(25.0%),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끼임(각 16.7%)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
- ② 굴착기 버킷, 브레이크 등 이탈방지용 안전핀 설치
- ③ 굴착기 목적 외 사용 금지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여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등]		
	②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 확인 [3톤 미만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취득]		
사전확인	③ 굴착기 이동반경 내 근로자 통제,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④ 굴착기 작업 위치의 지형 및 지반상태 사전 조사, 전도예방조치 [연약지반에서 작업 시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발생]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⑤ 운전자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상태		
	⑥ 후방확인조치(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설치 상태		
	⑦ 굴착기 버킷, 브레이크 등 이탈방지용 안전핀 설치		
	⑧ 전조등 및 후미등 설치 및 점등 상태		
굴착기 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⑨ 주요 구조부 및 제동장치의 적정성 확인 [유압장치, 조작장치, 제동장치,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무한궤도 트랙, 슈 등의 이상유무]		
	⑩ 굴착기는 굴착·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 작업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특히, 굴삭기 버킷에 근로자 탑승 금지]		
	⑪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		
수리·점검 시	⑫ 운전원의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음		
	⑬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설치		

9 후크·샤클 등(최근 5년 12명 死)



▶ 후크(Hook)란?

물건을 걸기 위한 갈고리로 중량물 인양 시 하중에 부착된 체인 및 와이어로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기구

▶ 샤클(Shackle)이란?

체인, 와이어로프 등과 연결하여 들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크레인 작업 중 샤클이 파손되며 떨어진 화물에 맞음
- ② 인양중인 화물이 후크에서 이탈하여 떨어진 화물에 깔림
<주로 물체에 맞음(75.0%), 깔림·뒤집힘(25.0%)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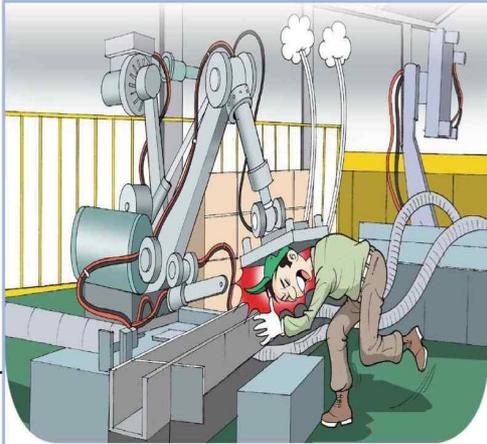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작업 전 후크/샤클의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확인 시 폐기
- ② 훅 해지장치/샤클 핀의 정상 체결 여부 확인
- ③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여부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		
	② 작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작업지휘자(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및 근로자 통제), 신호수(혼재작업 시 인양중인 운반물과 충돌 등 방지) 배치]		
공통 점검사항	③ 작업시작 전 후크/샤클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 확인 시 폐기		
후크 사용 시 점검사항	④ 후크/샤클에 표시된 사용 하중, 등급을 확인 후 사용 [화물 운반 시 후크, 샤클의 사용하중 이하의 화물만 운반]		
	⑤ 후크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개조된 것은 사용 금지 [①기계 가공의 추가, ②용접, ③열처리, ④전기도금 등]		
샤클 사용 시 점검사항	⑥ 인양작업 시 훅 해지장치의 올바른 사용 확인 - 훅 해지장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 훅 해지장치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용 등		
	⑦ 샤클 핀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 (대체품 사용 금지) ⑧ 샤클이 올바른 방법으로 체결되어 인양하는지 확인 		
	샤클핀이 회전하는 조건으로 사용금지		

10 산업용 로봇(최근 5년 11명 死)



▶산업용 로봇이란?

매니퓰레이터(로봇 팔 등) 및 기억장치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퓰레이터의 굽힘, 신축, 상하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계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로봇에 부착된 센서 해체 중 오작동으로 끼임
- ② 방호장치 해체 후 로봇 셀 안에서 작업 중 끼임
- ③ 로봇 수리 중 동료작업자가 가동스위치를 눌러 끼임
<주로 로봇 팔과 주변 구조물에 끼임(100.0%)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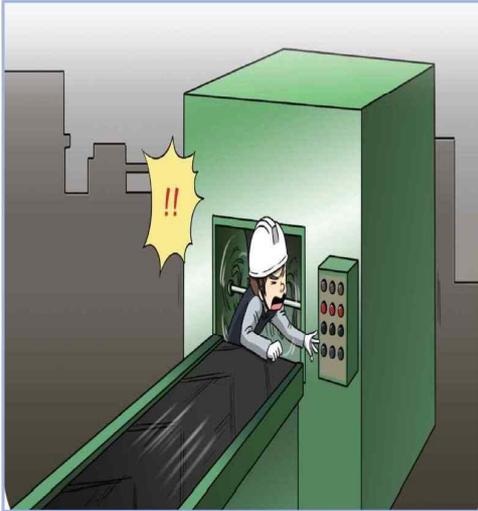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로봇 작동 시 근로자가 셀 내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② 로봇의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상태 유지 및 무효화 금지
- ③ 정비·유지보수 작업 시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사용(13.3월 이후 기계만 해당) [적용대상: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를 이용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② 방호장치(안전매트, 라이트커튼)는 안전인증품 사용 [안전인증 시행일(21.6.1.) 이후 출고한 제품만 해당]		
	③ 안점검사 수검 여부 확인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매 2년 마다]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④ 근로자가 제품 인입·인출부, 출입문 외로 셀 내부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산업용 로봇 작동 구역에 1.8m 이상 방책 설치 - 제품 인입·인출부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 출입문에는 출입문 연동장치(개방 시 로봇 전원 차단) 설치		
	⑤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라이트커튼 등)의 정상 작동상태 유지 및 관리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⑦ 로봇의 동력전원 차단 후 작업 시작		
	⑧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⑨ 셀 내부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금지		
근로자 준수사항	⑩ 작업 전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무효화 금지 -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라이트커튼 등		

11 분쇄·파쇄기(최근 5년 10명 死)



▶분쇄기 또는 파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분쇄기에 인화성 물질이 든 폐플라스틱 용기 투입 작업 중 폭발
- ② 스티로폼 분쇄기에서 페스티로폼을 누르면서 투입작업 중 내부로 추락하며 칼날에 끼임
- ③ 분쇄기 투입구로 원료 투입 중 회전날에 끼임
<주로 끼임(70%), 부딪힘, 폭발·파열, 화재(각10%)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투입구 덮개 설치 및 연동장치 정상작동 확인
- ② 분쇄물 투입 시 수공구 사용 및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등) 확인
- ③ 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및 “조작금지” 표지 게시

구 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관리적 사항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사용(‘13.3.1. 이후 제조·출고 제품) [적용제외: ①식품용, ②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이 예상되는 곳 표지판 설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③ 투입구 덮개 설치 및 연동장치(인터록장치) 정상작동 확인		
	④ 방호장치 임의 해체금지(연동장치 등)		
	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⑥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어반 전기기계·기구는 물기(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⑦ 투입물 중 인화성 물질 포함으로 화재·폭발 위험 확인		
	⑧ 작업장 및 해당 설비 장소 수시 정리·정돈·청소 실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예방 조치 실시]		
	⑨ 분쇄기·파쇄기 고소부위(투입구 등) 작업 통로 확보 및 안전조치 [적절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⑩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불시기동방지를 위한 동력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⑪ 비상 시 연락조치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근로자 준수사항	⑫ 분쇄물 과다투입 여부 확인 및 적정용량 투입 준수		
	⑬ 분쇄기·파쇄기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분쇄물 적정용량 투입, 투입용 보조기구(수공구) 사용,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 금지]		
	⑭ 적절한 작업복, 보호구 등의 착용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		

12 사출성형기(최근 5년 10명 死)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

▶주요 사망사고 사례

- ① 수직 사출성형기 점검 중 이동 금형이 상승하며 끼임
- ②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중 기계 작동으로 끼임
- ③ 사출성형기 생산 제품 불량 발생으로 금형 점검 중 기계가 작동되며 끼임

<주로 끼임(90%), 넘어짐(10%) 발생>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① 게이트가드(안전문) 연동장치 설치 및 작동확인
- ② 점검·수리·이물질제거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및 “조작금지” 표지 게시
- ③ 금형 교체 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구분	자율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관리적 사항	① 안전인증기계 사용('09.1.1. 이후 제조·출고 제품) [적용제외: ①반응형, ②압축·이송형, ③장화제조용, ④ 블로우몰딩 머신]		
	② 안전검사 대상(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확인 및 수검 [사업장 설치 끝난 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매 2년 마다]		
	③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이 예상되는 곳 표지판 설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국어로 표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④ 사출성형기 방호장치 설치 [①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②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 방호덮개 설치]		
	⑤ 이동 및 고정금형 간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설치상태·정상 작동 확인		
	⑥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⑦ 방호장치 임의 해체금지(연동장치 등)		
	⑧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어반 전기기계·기구는 물기(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 시	⑨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사출성형기 외함접지 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		
	⑩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불시기동방지를 위한 동력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 게시]		
근로자 준수사항	⑪ 비상시 연락조치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⑫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준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 금지]		
	⑬ 사출성형기 조작방법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⑭ 적절한 작업복, 보호구 등의 착용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니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p>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p> <p>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p> <p>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p> <p>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p> <p>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p> <p>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p>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p>	<p>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p> <p>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p> <p>(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p> <p>(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p> <p>(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p> <p>(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p> <p>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p> <p>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p> <p>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p> <p>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p>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p>	<p>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p> <p>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p> <p>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p>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기목은 적용)</p>	<p>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p> <p>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p>

제외)	<p>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p> <p>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10. 달비계 작업	<p>가.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일</p> <p>나.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p> <p>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p> <p>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p>
11. 발파작업	<p>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p> <p>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p> <p>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p> <p>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p> <p>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p> <p>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p> <p>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p> <p>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p> <p>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p> <p>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p>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p> <p>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p> <p>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p>
13. 화물취급작업	<p>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p> <p>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p> <p>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p> <p>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p>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p>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p> <p>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p> <p>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p>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p>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p> <p>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p>

	<p>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p> <p>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p> <p>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p> <p>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p> <p>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p>
<p>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p>	<p>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p> <p>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p>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p> <p>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p>(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p>

	<p>(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p> <p>(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p> <p>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p>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p>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p> <p>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p> <p>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p>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p> <p>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p> <p>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19. 고압작업	<p>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p> <p>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p> <p>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p> <p>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p> <p>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p> <p>(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p> <p>(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p> <p>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p>
20. 밀폐공간 작업	<p>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p> <p>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p> <p>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p> <p>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규칙 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흑·사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흠·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혹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3·3·3활동으로 안전 일터 만들기



3대 구성원이

(사업주, 관리감독자, 작업자)



3대 사고 유형을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3중 체제로 관리!!

(리스트 작성, 역할 부여, 확인)

- 당신의 일터에서 **위험한 작업**은 무엇인가요?
- 관리감독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의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나요?



01 유해 위험 요인 리스트 작성

3대 사고 유형(8대 위험요인) 기준으로 리스트 작성

유해위험 요인 리스트 예시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에서 “유해위험 요인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2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업무 수행

사업주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03 사업주 확인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자 보고 및 현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확인



붙임 4

「고용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 알림방」 참여 활용 안내

□ 알림방 개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사례를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수시로 제공(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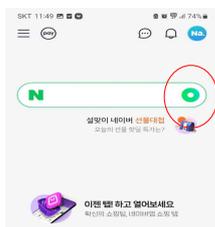


□ 협조요청 안내 사항

동 알림방에 참여 후 재해발생, 안전수칙 등 사례를 참조하여, 경영 중인 사업장에서 동일 유사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 예방조치 및 근로자 교육 자료로 활용

□ 알림방 참여 방법

- ① 네이버 접속 > 위젯 클릭 > (위젯 내) 해당 업종 QR코드 선택 > QR코드 접속



- ② 카카오톡 > 친구추가 > QR코드 접속
- ③ 카카오톡 > 오픈채팅 > 검색 > 대구청(또는 건설산재지도과)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 검색 > 오픈채팅방 참여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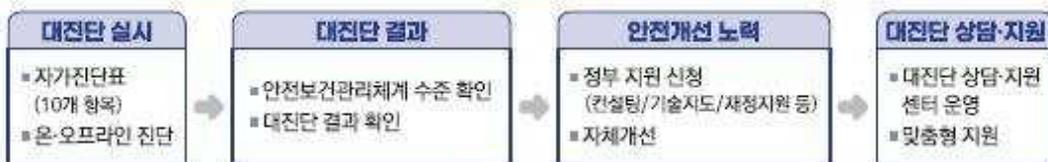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이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필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규석

산재예방지도과장

이도희

건설산재지도과장

전현철

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김성경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남재형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윤완희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편집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